

## 2018년도 문화재위원회

### 제1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8. 1. 18(목), 14:00 ~ 18: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김봉렬, 김지민, 이정수, 이찬희, 이호열,  
임영애, 전봉희, 주상희(정현), 천득염, 홍성걸  
(이상 10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목 차

## 【심의사항】

1	고성 육송정 홍교 주변 발전시설(태양광 발전) 설치(3차, 재심의)	공개
2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이전 및 주변정비(허가사항 변경, 재심의)	공개
3	여주 창리 삼층석탑 주변 근린생활시설 건립(허가사항 변경 2차)	공개
4	화성 용주사 대응보전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공개
5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공개

## 【검토사항】

6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7	창경궁 자격루 보존처리 및 이전 전시 검토	공개
8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주변 공양간 증축 검토(2차)	공개
9	창녕 관룡사 약사전 보수정비기본계획 검토	공개
10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 정밀안전진단 결과 검토	공개

## 【보고사항】

11	<p>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주 양진당 주변 하천 정비 사업</li> <li>- 서울 장의사지 당간지주 주변 다세대주택 건립</li> <li>- 함안 망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 주변 지장전(위패봉안소) 건립(6차)</li> <li>-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주변 도로확포장(농도 303호)</li> <li>- 익산 고도리 석조여래입상 및 승림사 보광전 주변 문화재투어 스탬프 가져대 설치</li> <li>- 함안 대신리 석조삼존상 주변 건강 힐링쉼터 및 문화공동체 마당 설치</li> <li>- 양산 통도사 대응전 및 금강계단 주변 보광선원 신축(제허가)</li> <li>- 여주 창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및 근생시설 신축(허가사항 변경)</li> <li>- 전주 풍패지관 주변 숙박시설 신축(허가사항 변경, 2차)</li> <li>-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li> <li>- 완주 송광사 대응전 주변 템플스테이체험관 부속시설 건립</li> </ul>	공개
----	--	----



##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8-01-001

### 1. 고성 육송정 홍교 주변 발전시설(태양광 발전) 설치(3차, 재심의)

#### 가. 제안사항

강원 고성군 소재 보물 「고성 육송정 홍교」 주변에 발전시설(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발전시설(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7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보고결과(2017.10.19) : 원안접수
  - 자체검토 회의 결과 : 불허(역사문화경관 저해)
- ※ ‘17년 문화재위원회 제13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7.11.16) : 부결
  - 지형변경 및 시설물 규모 과대
  - 문화재 진입부 경관 저해
- ※ ‘17년 문화재위원회 제14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7.12.21) : 보류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심의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고성 육송정 홍교
  - 소재지 : 강원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 1041번지
  - 지정일 : 2002. 02. 06.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 903, 908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05m
- 사업내용 : 발전시설(태양광 발전) 설치

구분	1차('17.10 / 불허)	2차('17.11 / 불허)	3차('17.12 / 보류)
사업면적	6,720m <sup>2</sup>	5,409m <sup>2</sup>	3,359m <sup>2</sup>
태양전지판	크기 : 1.64×0.98m 높이 : 2.68m 수량 : 1,716개	크기 : 1.64×0.98m 높이 : 2.68m 수량 : 1,450개	크기 : 1.64×0.98m 높이 : 2.68m 수량 : 882개
성토	549m <sup>3</sup>	950m <sup>3</sup>	499m <sup>3</sup>
절토	12,778m <sup>3</sup>	4,625m <sup>3</sup>	1,900m <sup>3</sup>
지형변화 높이	5.3m	2.4m	1.5m
경계웁스	-	길이 : 280m 높이 : 1.5m	길이 : 210m 높이 : 1.5m

라. 현지조사 의견(2018.01.15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신청부지는 홍교에서 수립대에 가려 잘 보이지 않으므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 2.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이전 및 주변정비(허가사항 변경, 재심의)

### 가. 제안사항

울산 울주군 소재 보물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이전 및 주변을 정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당해 문화재의 이전 및 주변을 정비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당해문화재 및 보호구역 내
- ※ ‘15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5.10.15) : 조건부 가결
  - 발굴조사 선행 후 재심의
- ※ ‘17년 문화재위원회 제14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7.12.21)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금당지 발굴결과를 설계에 반영토록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울주군수
- (2) 대상문화재 :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 소재지 :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512-1
  - 지정일 : 1963. 01. 21.
- (3) 추진경과
  - ‘15.10.15.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조건부 가결(발굴조사 선행 후 재심의)
  - ‘16.04.07. ~ ‘16.12.28. 간월사지 정밀발굴조사
    -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까지의 중문지, 강당지, 건물지, 담장지 등 발굴
    - 전형적인 산지가람의 쌍탑일금당식 구조로 중심사역 규모(4,800㎡ ↑) 확인

- '17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 사업 '보호각 건립' 설계비 반영
- '18년 '석조여래좌상 이전 및 보호각 신축공사비'(총442백만원) 반영 예정

(4)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512-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당해문화재 및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석조여래좌상 이전 및 주변정비

당초	변경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조여래좌상 이전, 보호각 신축 (81㎡, 다포양식)</li> <li>· 기존 보호각 리모델링</li> <li>· 기존 화장실 철거 후 신축</li> <li>· 탐방로 및 담장 조성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조여래좌상 이전, 보호각 신축 (57.6㎡, 주심포양식, 5량가, 맞배, 겹처마)</li> <li>· 기존 보호각 리모델링 후 관리사로 사용</li> <li>· 기존 화장실 철거 후 신축 (27.46㎡)</li> <li>· 발굴유구 정비 및 복토</li> <li>· 탐방로(박석 등성 깔기) 및 담장 조성</li> <li>· 주차장 2개소</li> </ul>	

**라. 용역 시행중 관계전문가 검토의견**

- '17.06.21. / 경주대 ○○○, 동아대 ○○○, 경주대 ○○○, 울산대 ○○○, 울산대 ○○○
  - 정비계획 및 탐방로계획은 보호각의 위치와 규모를 결정한 후 논의해야 할 사항이며, 1차적으로 금당지와 금당전면의 석축 상부 일부를 노출하고, 그 외의 부분은 발굴 전 상태로 복토하는 정비계획을 고려해 볼 것.(관람 동선은 금당지와 양 탑, 보호각 관람이 가능하도록 간결하게 계획할 것)
  - 보호각의 위치는 사역(담장유구)안의 강당지에 설치하도록 할 것
  - 보호각의 규모는 보호각으로서의 역할만 가능하도록 20~25평 내외의 맞배 지붕으로 계획하며, 통풍이 원활하도록 계획할 것(구조는 건축시기가 이른 건물을 참고하여 계획안을 작성 후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것)

- '17.08.18. / 부산대 ○○○, 경주대 ○○○, 동아대 ○○○
  - 보호각 건립위치는 사역 밖에 금당지와 축을 맞추어 설치하도록 할 것
  - 보호각 구조는 고식인 주심포 양식으로 하며 규모는 보호각 역할만 가능하도록 20평 내의 맞배지붕으로 계획할 것
  - 탐방로 계획은 간결하게 설치하도록 할 것
  - 발굴지 유구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복토계획을 세울 것
  - 발굴 유구 중 금당지와 금당 전면의 석축 상부 일부를 노출하고, 금당지 좌우의 추정 건물지 유구는 주변보다 40cm 정도 복토하여 건물지 유구를 표시하도록 함
  - 간월사지 부지 중 서쪽과 남쪽의 경계웁스는 관리상 용이한 재질로 설치하도록 함(지형 여건상 담을 축조하기 어려운 바, 철제 웁스를 시설하고 내측에 조정하여 역사 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 '17.08.18. / ○○문화재연구원 ○○○
  - 간월사지는 3금당 2탑식 가람구조일 가능성은 있으나 명확한 증거는 없고 영남지방에 3금당 구조의 사지를 찾아 볼 수 없어 향후 충분한 자료 검토 필요
  - 금당 기단 형태를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 기단의 재복원 필요
  - 1호 및 2호 건물지는 건물지의 형태가 드러날 정도로 복토 후 잔디 식재
  - 복토 시 유구가 보호될 정도의 최소한으로 복토하고 간월사지의 지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함
  - 5호 건물지는 초창기 중심사역의 서쪽 담장지 일부를 훼손한 후 건물지가 축조된 것으로 보이며 그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한 규모와 구조는 알아볼 수 없는 상태임

**마. 현지조사 의견(2018.01.02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보호각 이전은 당초 사역안으로(담장지 안쪽)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금당지 내부 불단(석조)에 석불(석조여래좌상)을 옮겨 보호하는 것이 문화재 보존의 진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 기존 석불과 사지 주변의 석조물을 보존·보호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연구가 필요함.
- 사지 내 수목 및 토석류 정비를 통하여 사지의 품격을 조성 및 유지할 필요성 있음.

##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석조여래좌상은 금당지 불단 위치로 이전토록 함
  - 석조여래좌상 보호각은 금당지 유구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경량의 심플한 형태로 하여 위원회에 재보고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 3. 여주 창리 삼층석탑 주변 근린생활시설 건립(허가사항 변경 2차)

#### 가. 제안사항

경기 여주시 소재 보물 「여주 창리 삼층석탑」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5m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7.5m이하”에 해당됨.
- ※ ‘1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4.05.15) : 원안가결
- ※ ‘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5.05.21, 변경허가) : 부결
  - 문화재 주변경관 저해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빅뱅경매에스엔비
- (2) 대상문화재 : 여주 창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기 여주시 상동 132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여주시 상동 84-1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81m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 건립(총10동)

구분	당초(기 허가)	변경신청(1차/불허)	금회 변경신청(2차)
부지면적	3,652m <sup>2</sup>	좌동	좌동
단지내 도로	995m <sup>2</sup>	좌동	좌동
건축면적	470.88m <sup>2</sup>	588.00m <sup>2</sup>	좌동
동수	근생시설(59.16m <sup>2</sup> ) : 6동 단독주택(57.96m <sup>2</sup> ) : 2동	근생(59.16m <sup>2</sup> ) : 7동 근생(57.96m <sup>2</sup> ) : 3동	좌동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좌동	좌동
층수 및 최고높이	지상 1층 / 6.805m(근생), 5.770m(단독)	지상 1층 / 6.805m(근생7동), 5.770m(근생3동)	좌동

####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 4. 화성 용주사 대응보전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 가. 제안사항

경기 화성시 소재 보물 「화성 용주사 대응보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지정에 따라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민 등의 의견청취 기간('17.09.29.~'17.10.18.)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화성시장
- (2) 대상문화재 : 화성 용주사 대응보전
  - 소재지 : 경기 화성시 송산동 188
  - 지정일 : 2017. 08. 14.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에 따른 허용기준 마련([붙임])
- (4) 신청사유
  - 화성 용주사 대응보전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에 따라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라. 관계전문가 자문의견

- ○ ○ ○ (2017.09.25 / 문화재전문위원)
  - 용주사 동남측 150m~300m에 걸쳐있는 자연녹지지역은 사찰 진출입로에 해당하고 전면 좌측부로 시각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므로 구역을 추가설정

하여 평지붕 11m이하, 경사지붕 15m이하로 강화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 ○ ○ (2017.09.25 / 신한대학교)

- 용주사 북측 및 북동측 영역을 개별심의 구역으로 보호하고 문화재 보호 구역 경계 100m 이내의 동측 영역을 2구역과 남측 현존 건축물의 높이와 조망권의 보호 등을 고려한 3구역 설정에 따른 계획은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잘 보호하고자 하는 기획안으로, 제시된 문화재 허용기준안과 같이 반영하여 실시되어도 무리함이 없다고 보임.

**마.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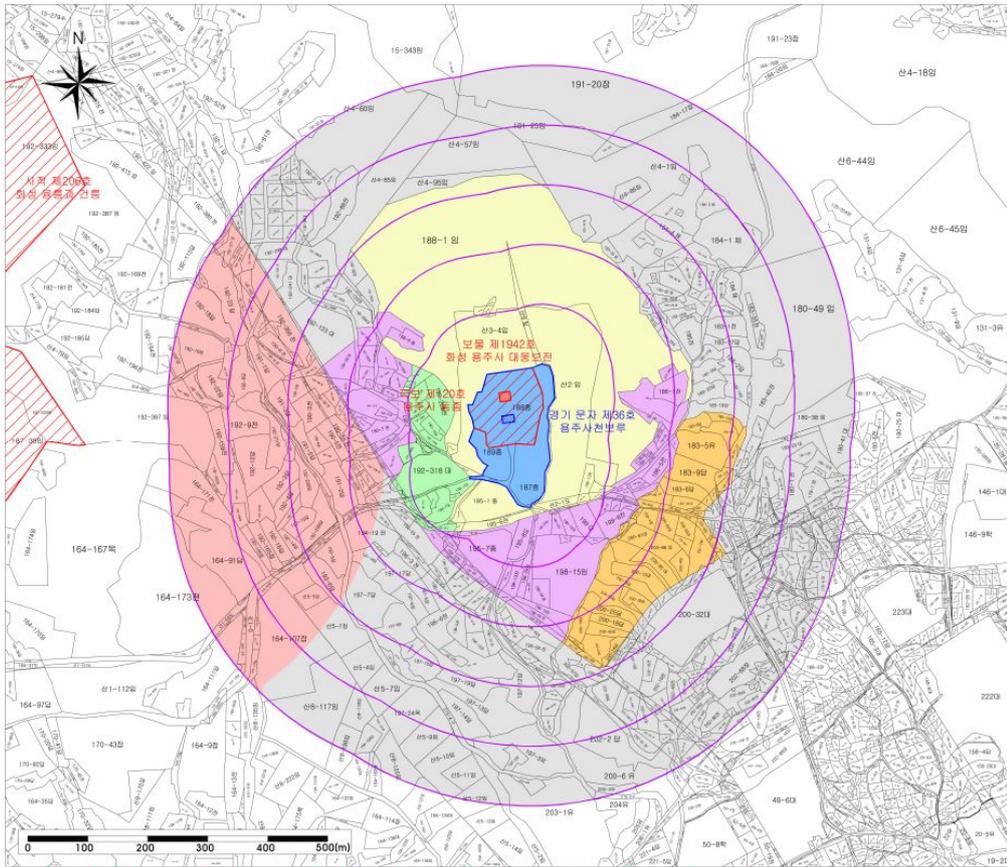
○ 조건부가결

- 사찰 전면부 경관을 고려하여 현 3구역을 일부 2구역으로 조정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붙임] 보물 제1942호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보물 제1942호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 외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보호구역
-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구분	용지기준	경사지붕(10:3 이하)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사적 제206호 “화성 용릉과 건릉”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6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축척 1 : 5,5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 사적 제206호 “화성 용릉과 건릉”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제6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 5.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 가. 제안사항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17년 건축문화재분과 소위원회 심의 및 위원회 검토를 거쳐 예고기간 동안 별도의견이 없던 건의 허용기준 조정(안)임

### 다. 주요내용

#### (1) 추진경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훈령 제399호, '16.04.29) 개정 등을 반영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2) 향후 계획

- 건축분과문화재위원회 심의('18.1.18.) 후 결과에 따라 관보에 고시

#### (3) 대상 문화재 (4건)

연번	지역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1	강원	보물	86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
2	충남	보물	355	홍성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3	경기	보물	1324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4	경북	보물	1575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붙임]**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내용

[붙임]

## 1. 강릉 골산사지 당간지주

### 가. 문화재 개요

- 지정 별 : 보물 제86호
- 소재 지 : 강원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1181번지
- 지정 일 : 1963. 01. 21.

### 나. 검토의견

- 사적(강릉 골산사지) 허용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조정

▣ 보물 제86호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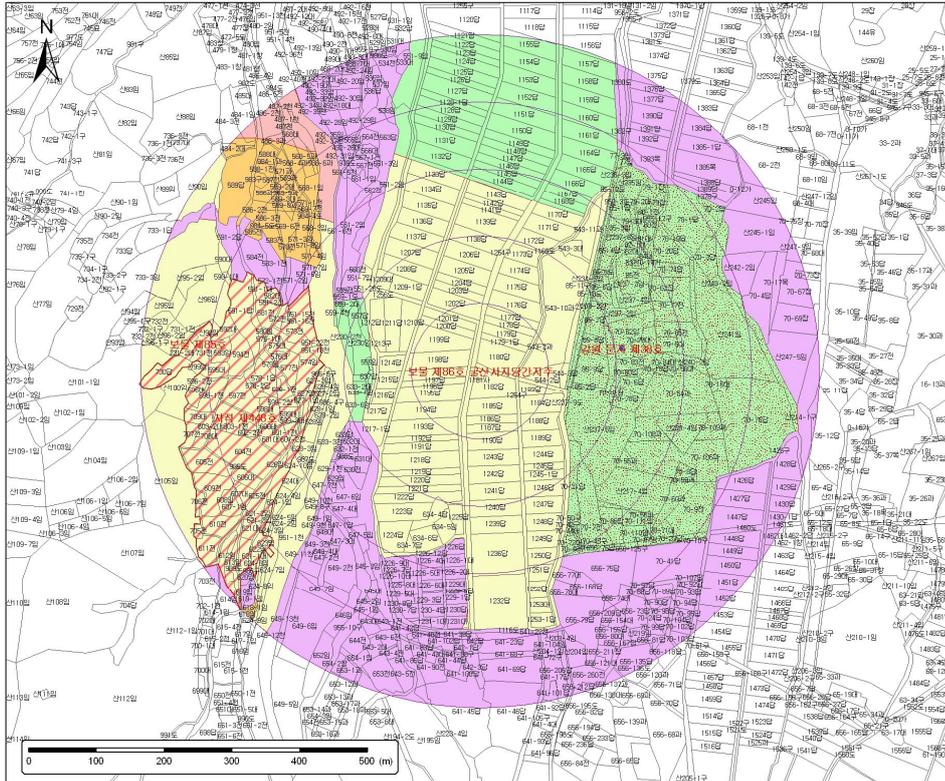
【 당 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2-1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터파기시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시행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5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변 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 입회조사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 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 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동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 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 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 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 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 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 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 당 초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보물 제86호**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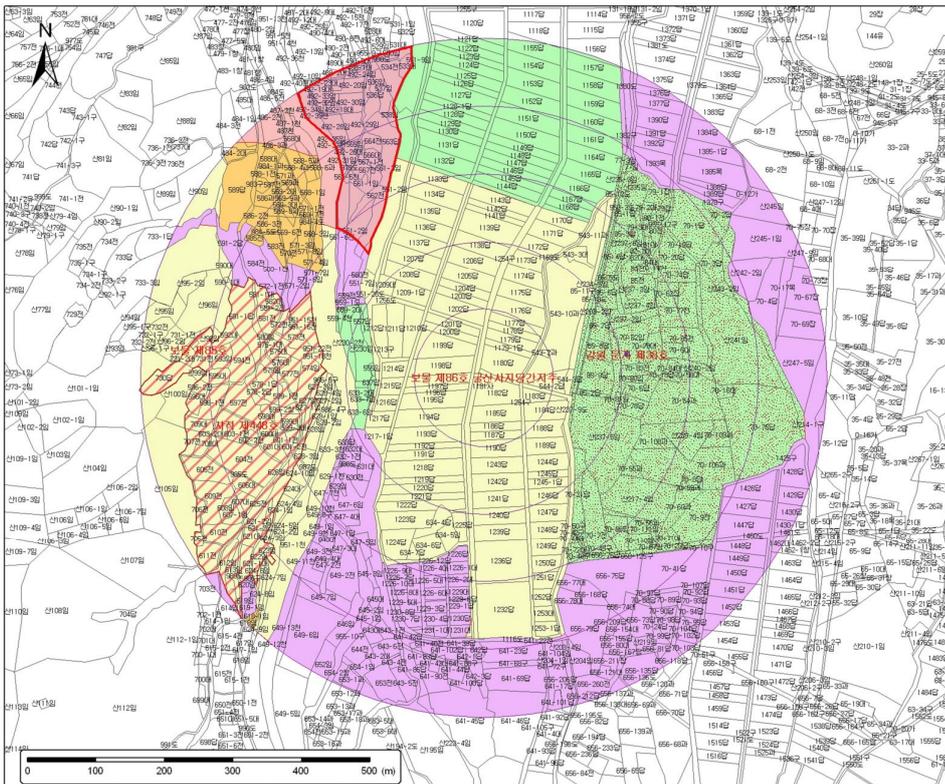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1181

##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 2-1구역
  - 3구역
  - 4구역
  - 5구역

축척 **1:4,500**

# 【 지자체 안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재조정안

**보물 제86호**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1181

##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 2-1구역
  - 3구역
  - 4구역
  - 5구역

축척 **1:4,500**

보 도며우 심재허와과 최이가 이우소 이우으로 후부최 이우어러 최구요르마 활요최시기 바귀마 모정 이 다우더우 이 사요은 크러 나디

## 2. 홍성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 가. 문화재 개요

- 지정 별 : 보물 제355호
- 소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산80-1번지
- 지정 일 : 1963. 01. 21.

### 나. 검토의견

-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일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국계법 등 관련법에 의해 처리하는 구역으로 조정

▣ 보물 제355호 “홍성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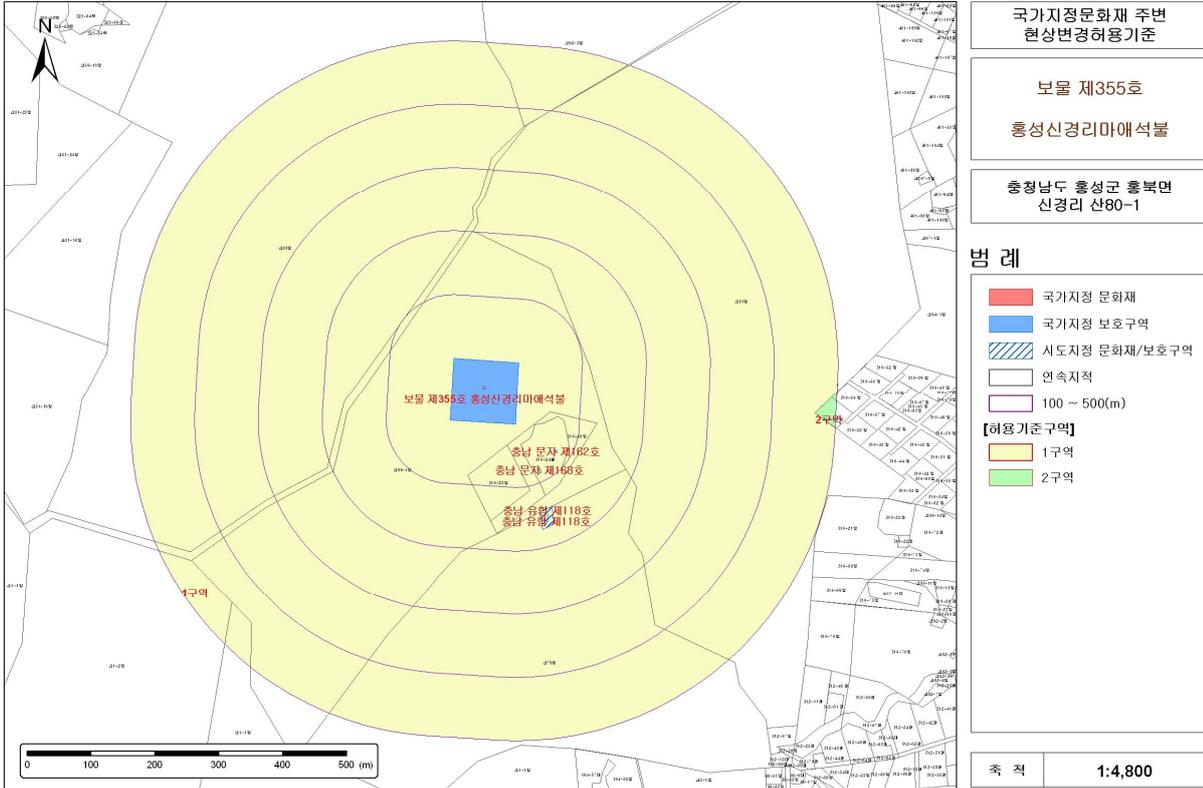
【 당 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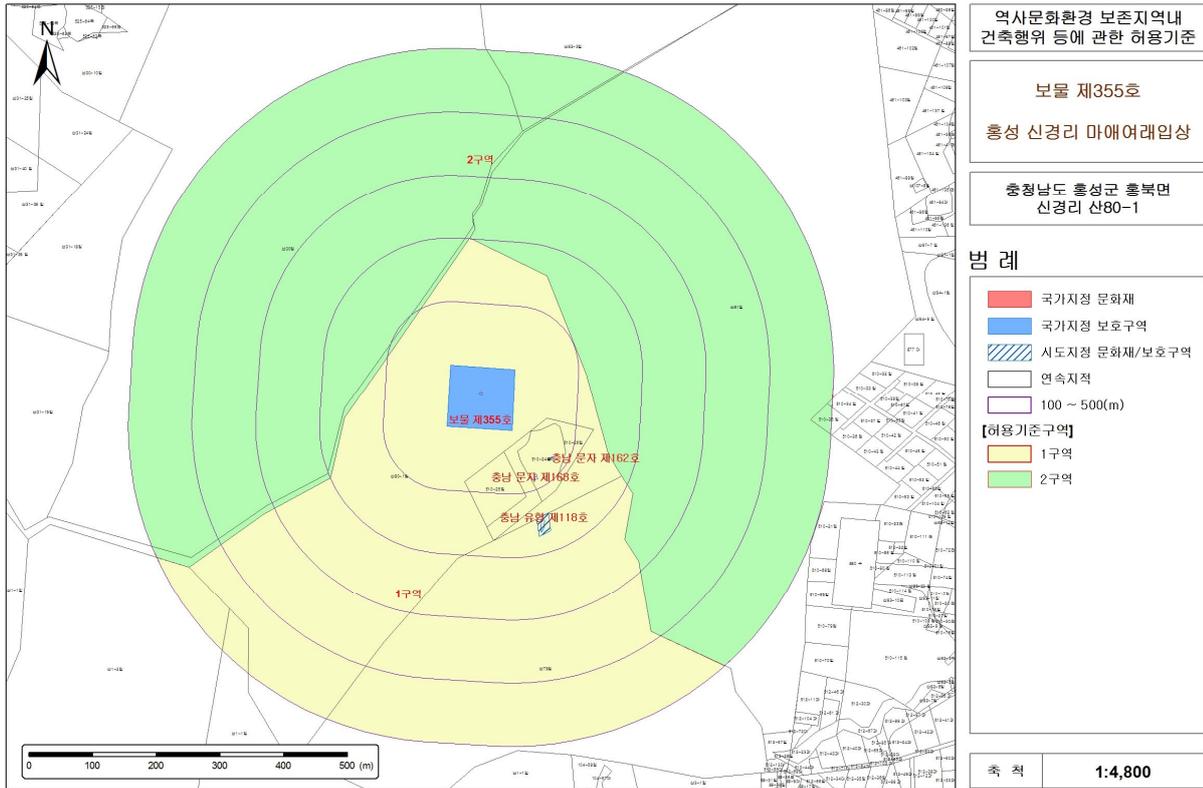
## 【 변 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 당 초 】



# 【 변경 】



### 3.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 가. 문화재 개요

- 지정 별 : 보물 제1324호
- 소재 지 : 경기 시흥시 대야동 산140-3번지
- 지정 일 : 2001. 09. 21.

#### 나. 검토의견

- 지자체 조정안에 따라 구역을 조정

▣ 보물 제1324호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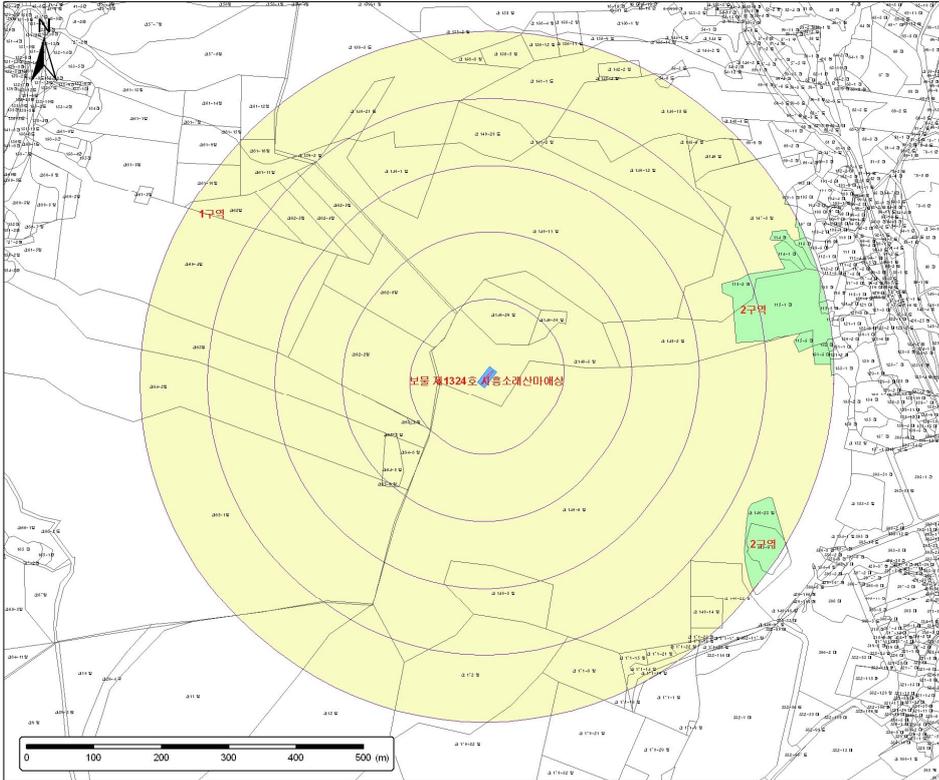
【 당 초 】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동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 당 초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보물 제1324호  
시흥소래산마애상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산140-3

**범 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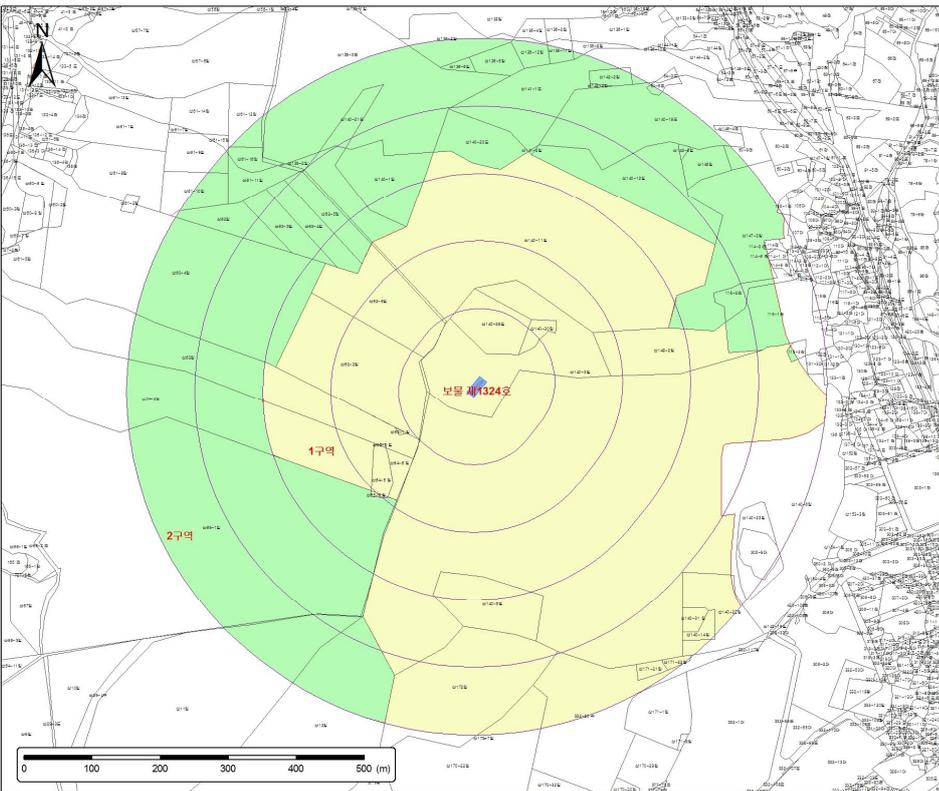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축 척      1:4,5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 변 경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보물 제1324호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산140-3

**범 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축 척      1:4,500

#### 4.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 가. 문화재 개요

- 지정 별 : 보물 제1575호
- 소재지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2길 36-12
- 지정 일 : 2008. 09. 03.

##### 나. 검토의견

- 동방사지 7층석탑 200m를 벗어나는 지역은 소로를 기준으로 조정하고, 주상공 지역 제외

▣ 보물 제1575호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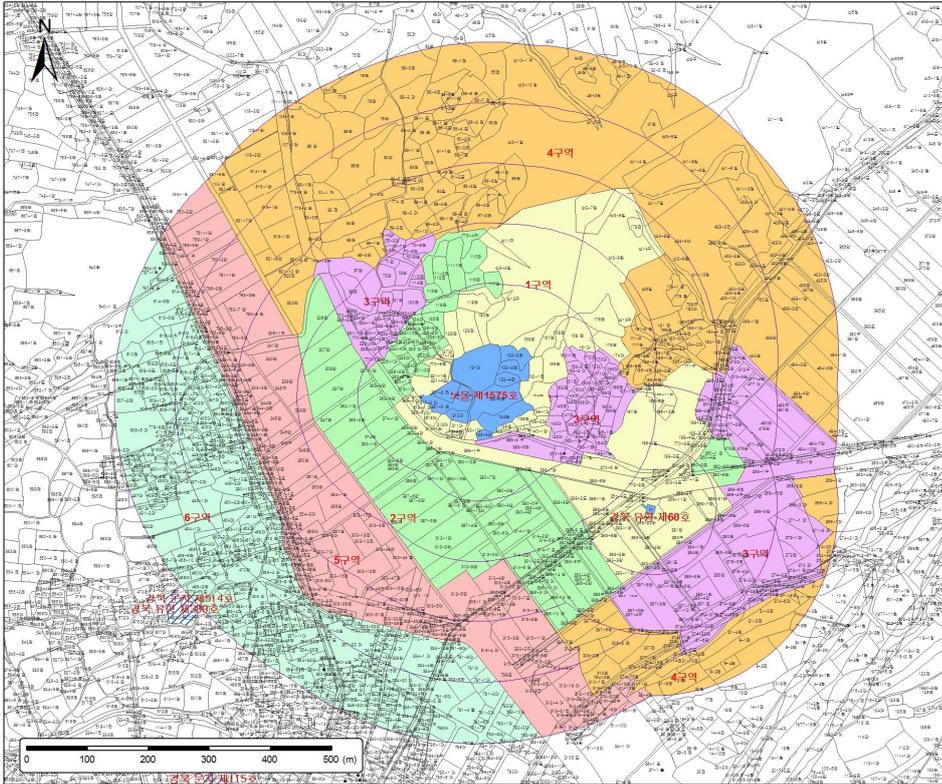
【 당 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5구역	○ 최고높이 14m(4층) 이하	○ 최고높이 18m(4층) 이하	
제6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p>○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p> <p>○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p> <p>○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p> <p>○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p> <p>○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p> <p>○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p> <p>○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p> <p>○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p> <p>○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p>		

【 변 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개별심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제6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 당 초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보물 제1575호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외 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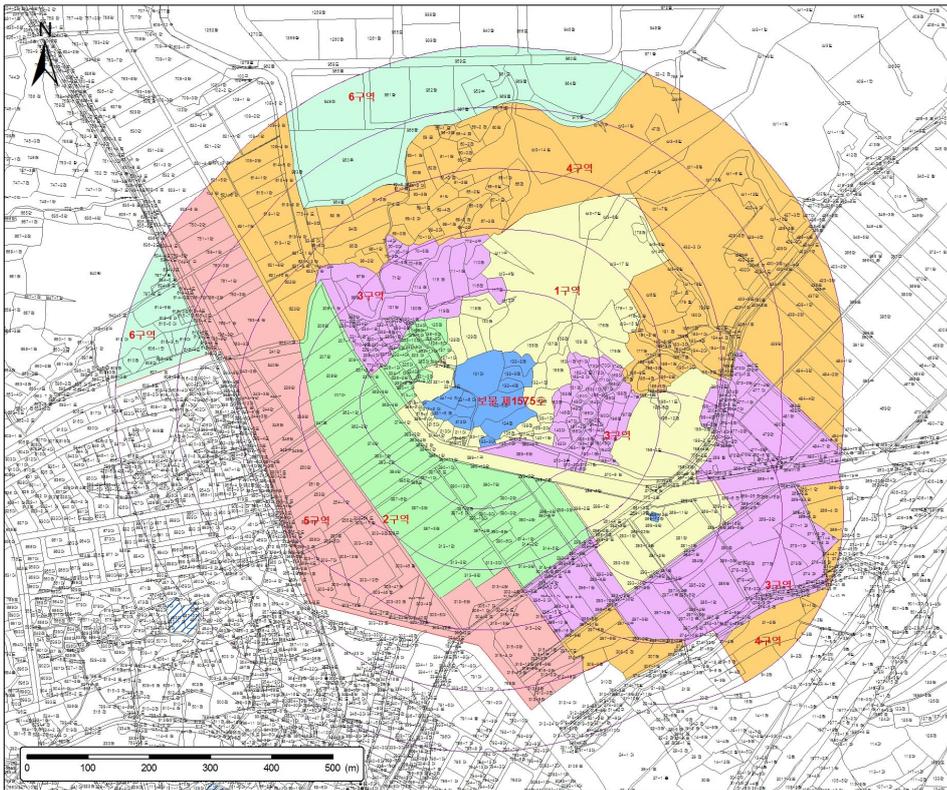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131

-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보호구역
  - 등쪽문화재구역
  -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 3구역
  - 4구역
  - 5구역
  - 6구역

축척 **1:5,000**

부대면의 시정리화개 위리가 아오스 이오구 호브리치 오이리서 차크요구마 화요리사기 비기리 모저 이 디오디이 시오오 그해 1111

# 【 변경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보물 제1575호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60호  
동방사지월출석탑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예산2길 36-12 (예산리)

-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보호구역
  -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 3구역
  - 4구역
  - 5구역
  - 6구역

축척 **1:5,000**

##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8-01-006

## 6.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충남 서산시 소재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충남 서산시 소재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충청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21호 「명종대왕태실및비」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산6-2
  - 지정일 : 1986. 11. 19.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瑞山 明宗大王 胎室 및 碑)
  - 소유자(관리자) : 서산시장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산6-2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지정면적 : 34.1㎡(보호구역 625㎡)
  - 수량 : 태실 1기, 비 3기
  - 구조/형식 : 석조/국왕태실(가봉태실)

**라. 현지조사의견(2017.08.25 / 단국대 교수 ○○○, 문화재전문위원 ○○○,  
대전시 학예연구사 ○○○)**

- 단국대 교수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대전시 학예연구사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변형된 판석 등 보존·정비 계획 수립 및 시행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7.08.25	대상문화재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미술사(석조미술)
	소속	단국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보물		
	문화재 명칭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7 년 10월 28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연혁·유래 및 특징

- 지정현황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21호
- 명 칭 : 명종대왕 태실 및 비
- 소 유 자 : 충청남도
-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산6-2
- 수 량 : 태실 및 비
- 재 질 : 화강암
- 형 식 : 태실의 전형양식
- 조성연대 : 1538년 태실 및 대군충령아기씨 태실비 건립.  
1546년 주상전하태실비 건립  
1711년 주상전하태실비 재 건립
- 현 상

### 1. 입지

명종대왕 태실 및 비는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에 소재한 태봉에 조성되어 있다. 유적의 주변은 가야산(해발 670m)으로부터 뺀어 내린 상왕산(해발 310m)의 서쪽 지맥에 위치한 태봉 정상(해발 약 200m)에 위치하고 있다 태봉의 전면에 해당하는 서쪽으로는 해발 100m 이내의 낮은 구릉지대가 전개되어 있으며, 원벌리와 상성리 그리고 서해안고석도로가 조망된다. 뿐만 아니라 유적의 남과 북 그리고 동쪽 지역으로는 한우개량사업소의 목장이 전개되어 있다. 이같은 지형적인 조건을 구성하고 있음에 따라 태봉은 주변의 낮은 구릉지대 중앙에 볼록 솟아오른 지형을 유지하고 있어 주변의 전체 경관이 한 눈이 조망될 만큼 뛰어난 입지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 2. 유적의 현황

명조대왕 태실 및 태실비는 난간을 구비한 태실과 대군충령아기씨비, 주상전하태실비 및 재 건립된 동일한 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유물은 중앙에 태실을 조성하고 서쪽인 전면에 3기의 비석이 병렬로 건립되어 있는 바, 각각의 특

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태실 및 난간

전체 8각의 평면을 지닌 난간석을 설치하고, 중앙에 태실을 배치했다. 태실은 기단과 탑신 및 옥개석에 이르기 까지 原形을 유지하고 있는데, 각각 일석으로 조성되어 있다. 방형으로 조성된 지대석과 기단은 일석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주변 바닥에 우전석과 면전석이 침하된 탓에 지대석이 노출되어 있다. 기단석의 측면에는 각면 5엽, 측면 1엽씩 모두 24판의 양연이 조식되어 있다. 기단부의 상면은 편명하게 처리하였다. 탑신부는 원구형으로 배흘림현상이 도드라져 전체적으로 안정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표면에는 아무런 조식이 없다. 옥개석과 상륜부는 모두 일석으로 조성되었는데,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며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추녀와 전각의 반전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두툼하게 표현된 내림마루의 끝에는 여의두문이 조식되어 있다. 낙수면의 경사는 급하게 조성되었지만, 정상에 조식된 화문과 이로부터 연결되는 내림마루와 낙수면이 조화를 이룬 탓에 경쾌한 조형미를 보이고 있다. 정상에는 일석으로 조성된 연봉형 보주를 놓았다.

태실의 주변에는 우상석과 면상석을 놓아 태실로부터 방사선형을 이루며 구축했는데, 탑신을 중심으로 외곽을 향해 일정하게 펼쳐지는 양상이, 안쪽으로는 탑신을 향해 모아지는 형식을 지이고 있다. 이처럼 바닥을 구성하는 각 부재는 지반 침몰로 인해 평명의 수평이 흐트러지고, 부분적으로는 석재가 절단된 형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바닥석의 측면에는 연엽주석과 연엽동자주석이 8개씩 배치되어 있다. 전자의 부재가 8각의 모서리를 이루고 있으며, 후자의 부재는 중간부에 배치되어 있고, 상단에는 난간석이 황으로 걸쳐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태실의 난간석은 완형을 유지하고 있고, 의궤에 표현된 것과 일치하고 있어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대군춘령아기씨 태실비

비좌·비신·이수로 구성된 석비로 높이 152cm의 규모인데, 비신과 이수는 일석으로 조성되어 있다. 전면에는 ‘大君椿齡阿只氏胎室’, 후면에는 ‘嘉靖十七年二月

十一日卯時立’의 명문이 음각되어 있어 1538년에 건립된 태실비임을 알 수 있다, 비좌의 전면과 측면에는 각각 장방형의 액을 조성한 후 내부에 안상을 배치하고 있는데, 상단에는 모두 18엽의 복연을 조식하고 있다. 이수는 전체적으로 연잎을 엮어 놓은 형상으로, 전면과 후면의 하단 중앙에는 연잎이 말려 올라간 형상을 보이고 있다. 이의 상면으로는 ‘人자형’의 줄기가 표현되어 있다.

### 3) 주상전하태실비(가봉비)

1545년 인종의 승하로 인해 명종이 등극한 다음 해인 1546년에 기존의 아기씨 태실을 가봉하면서 건립한 비석이다. 높이 205cm의 규모로 비좌와 비신 및 이수를 구비하고 있는데, 비신과 이수는 일석으로 조성했다. 비좌의 전면과 측면에는 장방형의 액을 조성하고, 상면에는 16관의 복연을 조식했다. 비좌는 전체적인 양식을 보아 1970년대의 복원 과정에서 새로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신은 비좌와 이수와는 달리 대리석으로 조성했다. 전면에는 ‘主上殿下胎室’, 후면에는 ‘嘉靖二十五年十月日建’이라 음각한 점으로 보아 1546년에 건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수에는 4면에 모두 운문을 가득 조식했는데, 전면에는 운문사이에 중앙에 보주를 중심으로 두 마리의 용을 조각했다. 이수 전체에 걸쳐 균열과 박락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보존 대책이 요망된다.

### 4) 주상전하태실비(개수비)

귀부·비신·이수로 구성된 비석으로 전체 높이는 275cm이다. 귀부는 머리는 전면을 향해 힘차게 솟아있고, 귀감문은 대부분 마멸되었지만, 상단에는 넓게 화문이 조식되어 있다. 화문의 중앙에는 낮은 장방형의 비좌를 마련해 비신을 받고 있다. 네 발은 모두 전면을 향해 웅크린 자세를 지니고 있으며, 꼬리는 좌측으로 몸에 감겨져 있는 형상이다. 비신의 전면에는 ‘主上殿下胎室’, 후면에는 ‘後一百六十五年辛卯十月日改石’이라고 음각되어 1711년에 건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수는 비신과 일석으로 조성되었는데, 네 면에는 운문을 가득 조식했다. 전면과 후면에는 운문 사이에 용문이 부조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봉비와 같은 양식을 보이고 있지만, 전자에 비해 양식적으로 퇴화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

비석은 후면의 명문을 볼 때 1710년의 태실 보수시 문제점이 노출되어 1545년에 건립되었던 태실비를 1711년에 다시 건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힘차고 당당한 귀부의 양식을 볼 때 재건시 본래의 귀부를 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특 징

명종조대왕 태실 및 비는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태실 중 가장 완전한 양식을 구비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태봉등록』 등의 문헌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태봉의 위치 역시 『여지도』, 『해동지도』, 『조선팔도지도』, 『지승』, 『조선지도』, 『팔도군현지도』, 『청구도』, 『광여도』, 『1872년지방지도』, 『청구요람』 등의 고지도 서산 및 해미조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그중요성이 인식되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태실은 아가씨태실의 조성으로 부터 수리와 관리등에 대한 기록이 완벽하게 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성당시의 위치에 전체 유물이 모두 전승되고 있다. 더불어 문헌기록과 더불어 비석의 명문을 통해 건립연대를 명확히 알 수 있어 조선시대 석조물과 문양의 편년을 결정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더불어 태실과 난간은 물론 석비를 구성하는 부재들이 모두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점 또한 주목되는 양상이라 하겠다.

### 4.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명종대왕 태실 및 태실비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주목되는 유물이다.

첫째, 태실의 건립에서부터 보수와 관리등에 관한 기록이 전하고 있다.

둘째, 조성당시의 유물은 물론 재 건립한 태실비에 이르기까지 전체 유물이 원 위치에 보존되어 있다.

셋째, 태실과 이를 둘러싼 난간, 아가씨 태실비 및 주상전하 태실비에 구현된 양식은 건립연대가 분명해 당대 석조미술은 물론 문양사 연구의 편년 설정에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태봉을 둘러싼 주변의 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이를 풍수지리설에 입각해 보아도 명당의 지형을 선택해 조성했다.

다섯째, 현존하는 조선시대의 태실 중 가장 완벽한 보존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조선시대 왕실의 태실문화를 규명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상과 같은 면면을 고려할 때 명종대왕 태실 및 태실비는 충청남도 유형문화재에서 보물로 승격해 보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승격 이후에는 태실 전체에 대한 보존과학적 보존처리가 요망된다. 뿐만 아니라 태봉으로 진입하는 진입로는 물론 유적 전체에 대한 정비계획의 수립과 실행 역시 요망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7.08.25	대상문화재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전직(고문서)
	소 속	문화재청	직위(직책)	전문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보물		
	문화재 명칭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7 년 12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연혁·유래 및 특징

- 지정현황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21호
- 명 칭 : 명종대왕 태실 및 비(明宗大王胎室 및 碑)
- 소 유 자 : 충청남도
-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산6-2
- 수 량 : 1식(태실 및 비)
- 규 격 : 각 실측치 참조
- 재 질 : 화강암
- 형 식 : 태실의 전형양식
- 조성연대 : 1538년 태실 및 대군춘령아기씨 태실비 건립.  
1546년 주상전하태실비 건립  
1711년 주상전하태실비 재 건립
- 현 상

명종대왕 태실 및 비는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에 소재한 태봉에 조성되어 있다. 유적의 주변은 한남금북정맥의 칠현산으로부터 이어진 가야산(해발 678m)으로부터 뺀어 내린 상왕산(해발 310m)의 서쪽 지맥에 위치한 태봉 정상(해발 약 200m)에 위치하고 있다 태봉의 전면에 해당하는 서쪽으로는 해발 100m 이내의 낮은 구릉지대가 전개되어 있으며, 원벌리와 상성리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가 조망된다.

유적은 주변의 낮은 구릉지대 중앙에 볼록 솟아오른 지형을 유지하고 있어 주변의 전체 경관이 한 눈이 조망될 만큼 뛰어난 입지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좌향은 「주상전하태실비(主上殿下胎室碑)」와 태실의 중심을 연결할 때 도북방향에서 서쪽방향으로 약 51°가량 틀어서 배치되었다.



명종대왕 태실 및 비 주변 경관(2009년 촬영) - 지정신청보고서 사진 재전재



명종대왕 태실 및 비 주변 경관-남서쪽 도로에서 (2015년 촬영) - 지정신청보고서  
사진 재전재



1997년 바닥 판석 정비 이전의 전경



정비 이후 명종대왕 태실 및 비

유적은 일제강점기때인 1928년경 태호(胎壺)외 지석(誌石)이 경기도 고양 서삼릉(西三陵)으로 옮겨지면서 훼손되었으나, 1975년경 수습 차원의 정비가 이루어져 복원되었다. 이후 1986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 121호로 지정되었고, 1997

년에는 태실 주변을 화강석 판석으로 정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유적의 주변 지역이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적인 한우개량사업소의 목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유적이 잘 보존 유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 ○ 특 징

조사 대상 유적은 조선 제13대 국왕인 명종의 태실과 그 비석이다. 조선 왕실에서는 왕·왕비·대군·군·왕세자·왕세손·공주·옹주 등이 출산하면 태(胎)를 버리지 않고 태실(胎室)에 봉안하였다. 태는 일반적으로 태항아리[胎甕]에 안치하였으나 왕세자나 왕세손 등 보위를 이어받을 사람의 경우에는 태봉(胎峰)으로 가봉(加封)될 것을 감안하여 석실(石室)을 만들어 보관하였다. 왕실에서 태를 태실에 봉송(奉送)하는 절차와 봉안하는 의식은 매우 엄격하였는데, 『춘관통고(春官通考)』 등의 문헌에 관련 기록이 실려 있다. 왕자나 공주·옹주가 태어나면 관상감(觀象監)에서 태를 봉안할 장소를 물색하는 한편 봉송 및 개기(開基)·봉토(封土) 등의 날을 정하였고, 선공감(繕工監)에서는 태를 봉송할 도로를 닦아 역사(役事)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였다. 태실의 역사가 끝나면 告后土祭(고후토제)·胎神安慰祭(태신안위제)·謝后土祭(사후토제) 등의 의식을 거행하였고, 태실 주위에 금표(禁標)를 세워 채석·벌목·개간·방목 등의 행위를 금지시켰다.

명종은 1534년 중종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1999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 결과 확인된 명종 태실의 지석(誌石)에는 “황명가정십삼년오월이십이일인시생(皇明嘉靖十三年五月二十二日寅時生) 왕남대군춘령아지씨태가정십칠년이월이십일일묘시장(王男大君椿齡阿只氏胎嘉靖十七年二月二十一日卯時藏)”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국립문화재연구소, 『西三陵胎室』, 1999, 30쪽), 이를 통하여 명종은 1534년에 태어났지만 태실 및 「대군춘령아지씨태실비 [大君椿齡阿只氏胎室碑]」는 1538년 왕실의례에 따라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인종이 1545년 갑작스럽게 승하하면서 왕위에 오르면서 태실을 가봉(加封)하면서 「주상전하태실비(主上殿下胎室碑)」를 세웠고, 몇차례의 개수 이후 1711년에 종전의 비석이 손상되어 새롭게 「주상전하태실비」를 재건하였다.

명종대왕 태실에 세워진 비석의 훼손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과 『태봉등록』 등에 그대로 남겨져 있어 그 변천 과정을 살펴는데 매우 유익하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명종실록 3권 1년 4월22일 (1546)

인종대왕 태봉의 돌난간을 고쳐 배치하는 일은 매우 중대한 일이므로 작은 폐단을 따질 수 없습니다. (중략) 청컨대 몇 달 더 늦추었다가 추수가 끝난 후 하게 하고, 서산의 태봉역사도 또한 추수 이후에 행하소서.

② 선조수정실록 9권 8년 11월1일 (1575)

도적이 명종의 태봉(胎封)을 허물었다. 이 태봉은 서산(瑞山)에 있는데 간악한 백성이 군수를 해치려고 하여 태실(胎室)의 돌난간을 깨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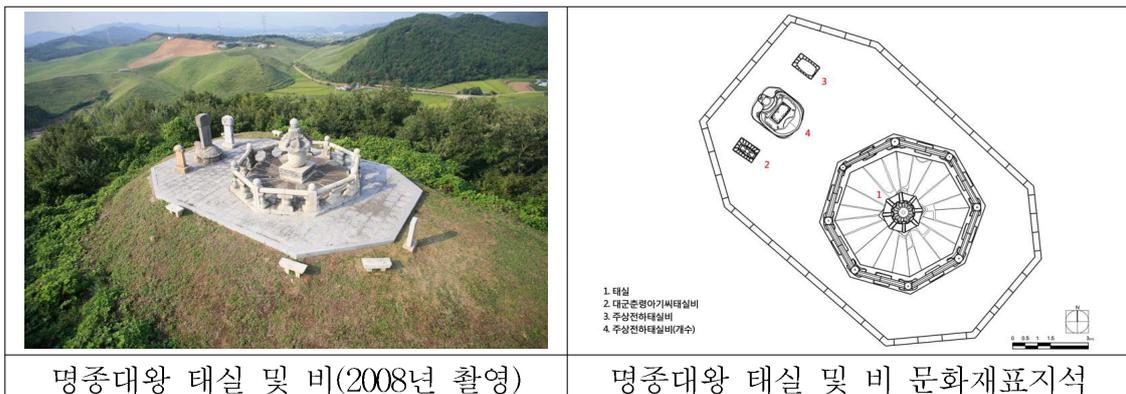
③ 태봉등록 경인 10월초9일 (1710)

충청 감사 홍중하(洪重夏)의 장계에, “이곳에 도착하여 순시(巡到)하며 봉심(奉審)하였더니, 서산군(瑞山郡)에 있는 명종대왕의 태봉과 대흥군(大興郡)에 있는 현종대왕의 태봉의 금표(禁標) 안에 범작(犯斫)이나 모경(冒耕)한 일은 없었사오나, (중략) 서산군 태봉은 태실을 둘러싼 난간석 북쪽 횡중석(橫竹石) 중간 부분 한 곳이 손상되어 금이 갠습니다만, 양쪽 머리가 주석(柱石: 기둥 돌)에 걸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빠져서 내려앉지는 않고 있었사오며, 그 위에 돌가루(石灰)를 칠하여 부러지고 손상된 부분을 덮어서 은폐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귀대석(龜臺石) 위에 있는 표석(標石) 앞면에 새겨진 ‘主上殿下胎室’이란 글자 중에 ‘上’자와 ‘殿’자, 그리고 뒷면에 새겨진 ‘嘉靖二十五年月日建之’ 중의 ‘建’자가 모두 파괴고 손상되어 있기에 ‘혹시,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비바람에 마손되어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았더니, 표석 앞면과 뒷면에 새겨진 다른 글자들은 글자 획이 완연(宛然)한데 유독 이 세 글자만 손상되었으며, 돌 빛깔도 다른 글자들보다 더 산뜻하였습니다. 이것은 나무꾼들이거나 무식배들이 쪼는 것이든지, 산직이가 혐의를 두고 있는 자의 소행이든 지간에 손상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기에, 해당되는 차지 향소(鄉所)와 색리(色吏), 감관(監官), 산직이(山直) 등은 언제 어떻게 손상되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각자에게 엄한 형벌을 가한 뒤, 목에 칼을 씌우고(着枷)옥에 가두어 놓았거니와, 군수 정도징(鄭道徵)은, ‘애초에 영문(營門)에서 공문을 하달하여 주의를 환기 시킨 날, 이미 군수 자신이 직접 가서 죄상을 조사(摘奸)하였습니다.’라고, 보고는 하였지만 단지, ‘경내(禁標)에 모경(冒耕)이나 범작(犯斫)한 것이 없습니다.’라고만 보고했을 뿐, 신

이 직접 조사한 내용과 같은 말은 거론한 적이 없었으며, 심지어 돌가루(石灰)를 사용하여 죽석(竹石)의 손상된 부분을 칠해서 은폐한 흔적이 있었을 뿐 아니라, 표석에 새겨진 글자가 손상된 사실은 매우 중대한 변고인데 불구하고, 끝까지 덮어두고 영문(營門)에 보고하지 않은 죄상 또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므로, 그 고을 군수 정도징을 우선 파직시켜 축출(罷黜)하시고, 그의 죄상은 그 관청(攸司)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중략) 서산군(瑞山郡)에 있는 태실 문제는 북쪽 난간 죽석(竹石)과 표석인데, 표석(標石)의 각자(刻字)가 손상되고 파인 곳이 있는 줄을 이미 알고서도 즉시 고치지 않았으니, 사리의 체모로 보아 어찌해야 하울지 모르겠습니다. 표석의 각자(刻字)는 인본(印本)을 근거하여 상고해 보시면, 손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 있을 것이옵기에, 표석 앞뒷면을 한 장씩 찍어서 함께 올림으로, 예람(睿覽)에 대비하였사오니, 표석을 다시 바꾸어야 할는지 그냥 두어도 될는 지는 소관 부처(該曹: 이 때 소관 부처는 예조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강정(講定)하도록 하옵소서.”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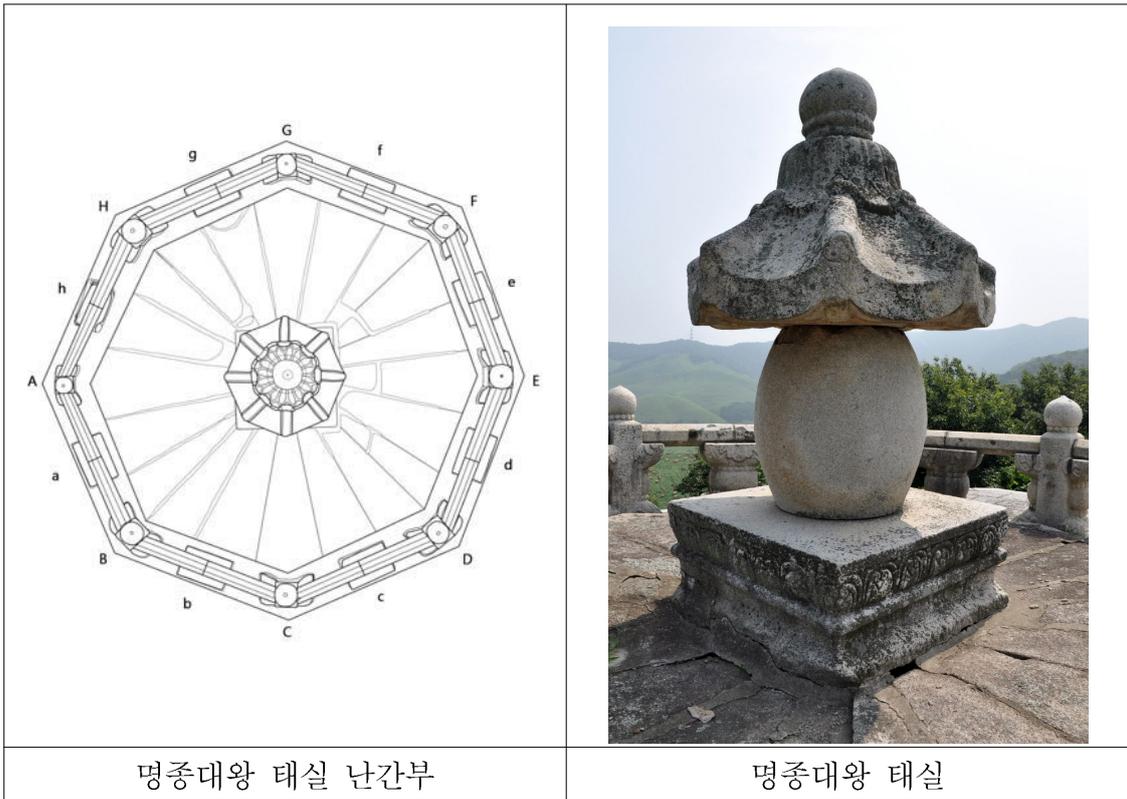
이같이 명종대왕 태실과 비석은 건립 이후 수차례 훼손과 개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1575년에 기록된 내용은 가봉 태실과 비석에 훼손이 있었던 사실과 그 원인을 보여준다. 또한 1710년 충청 감사 홍중하(洪重夏)의 장계를 통하여는 표석과 그곳에 새겨진 글씨의 훼손 상태 그리고 그에 대한 행정 처리 등에 대한 사실이 담겨져 있어 매우 흥미롭다.

명종대왕 태실은 난간을 구비한 태실과 「대군춘령아기씨태실비 [大君椿齡阿只氏胎室碑]」 그리고 「주상전하태실비(主上殿下胎室碑)」(加封碑)와 1711년 재건립된 「주상전하태실비(主上殿下胎室碑)」(改修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석물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태실 및 난간

태실은 8각의 평면을 지닌 난간석을 설치하고, 중앙에 태실을 배치했다. 태실은 사방석(四方石)과 중동석(中童石) 및 개첨석(盖簷石) [ 『정종대왕태실가봉의궤(正宗大王胎室加封儀軌)』, 1801, 규장각]에 이르기 까지 원형(原形)을 유지하고 있는데, 각각 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방석(기단)은 방형으로 하나의 돌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변 바닥에 우전석과 면전석이 침하된 탓에 지대석이 노출되어 있다. 기단석의 측면에는 각 면마다 양련이 5엽, 모서리 1엽씩 모두 24관의 연꽃이 조식되어 있다. 기단부의 상면은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중동석은 원구형으로 배흘림현상이 도드라져 전체적으로 안정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표면에는 아무런 조식이 없다. 개첨석(옥개석)은 모두 일석으로 조성되었는데,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며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추녀와 전각의 반전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두툼하게 표현된 내림마루의 끝에는 여의두문이 조식되어 있다. 낙수면의 경사는 급하게 조성되었지만, 정상에 조식된 화문과 이로부터 연결되는 내림마루와 낙수면이 조화를 이룬 탓에 경쾌한 조형미를 보이고 있다. 정상에는 일석으로 조성된 연봉형 보주를 놓았다.



태실의 주변에는 우상석과 면상석을 놓아 태실로부터 방사선형을 이루며 구축했는데, 중동석을 중심으로 외곽을 향해 일정하게 펼쳐지는 양상이, 안쪽으로는 중동석을 향해 모아지는 형식을 지이고 있다. 이처럼 바닥을 구성하는 각 부재는 지반 침몰로 인해 평면의 수평이 흐트러지고, 부분적으로는 석재가 절단된 형상을 보이고 있다.

난간은 연엽주석(蓮葉柱石)과 연엽동자주석(蓮葉童子柱石)이 8개씩 배치되어 있고, 그 상단에 난간석이 황으로 걸쳐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태실의 난간석은 완형을 유지하고 있고, 의궤에 표현된 것과 일치하고 있어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명종대왕 태실 난간

## 2) 대군춘령아기씨태실비 [大君椿齡阿只氏胎室碑]

비좌·비신·이수로 구성된 석비로 높이 152cm의 규모인데, 비신과 이수는 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면에는 ‘大君椿齡阿只氏胎室’, 후면에는 ‘嘉靖十七年二月十一日卯時立’의 명문이 음각되어 있어 1538년에 건립된 태실비임을 알 수 있다, 비좌의 전면과 측면에는 각각 장방형의 액을 조성한 후 내부에 안상을 배치하고 있는데, 상단에는 모두 18엽의 복연을 조식하고 있다. 이수는 전체적으로 연잎을 엮어 놓은 형상으로, 전면과 후면의 하단 중앙에는 연잎이 말려 올라간 형상을 보이고 있다. 이의 상면으로는 ‘人자형’의 줄기가 표현되어 있다.

	
<p>대군춘령아지씨태실비</p>	<p>탑본</p>

### 3) 주상전하태실비(가봉비)

1545년 인종의 승하로 인해 명종이 등극한 다음 해인 1546년에 기존의 아기씨 태실을 가봉하면서 건립한 비석이다. 높이 205cm의 규모로 비좌와 비신 및 이수(水首)를 구비하고 있는데, 비신과 이수는 일석으로 조성했다. 비좌의 전면과 측면에는 장방형의 액을 조성하고, 상면에는 16판의 복연을 조식했다. 비좌는 전체적인 양식을 보아 1970년대의 복원 과정에서 새로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신은 비좌와 이수와는 달리 대리석으로 조성했다. 전면에는 ‘主上殿下胎室’, 후면에는 ‘嘉靖二十五年十月日建’이라 음각한 점으로 보아 1546년에 건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수에는 4면에 모두 운문을 가득 조식했는데, 전면에는 운문사이에 중앙에 보주를 중심으로 두 마리의 용을 조각했다. 이수 전체에 걸쳐 균열과 박락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보존 대책이 요망된다.



#### 4) 주상전하태실비(개수비)

귀부·비신·이수로 구성된 비석으로 전체 높이는 275cm이다. 귀부는 머리는 전면을 향해 힘차게 솟아있고, 귀갑문은 대부분 마멸되었지만, 상단에는 넓게 화문이 조식되어 있다. 화문의 중앙에는 낮은 장방형의 비좌를 마련해 비신을 받고 있다. 네 발은 모두 전면을 향해 웅크린 자세를 지니고 있으며, 꼬리는 좌측으로 몸에 감겨져 있는 형상이다. 비신의 전면에는 ‘主上殿下胎室’, 후면에는 ‘後一百六十五年辛卯十月日改石’이라고 음각되어 1711년에 건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수는 비신과 일석으로 조성되었는데, 네 면에는 운문을 가득 조식했다. 전면과 후면에는 운문 사이에 용문이 부조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봉비와 같은 양식을 보이고 있지만, 전자에 비해 양식적으로 퇴화된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귀부는 힘차고 당당한 양식을 볼 때 재건시 본래의 것을 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명종대왕 태실 및 비는 조선왕실의 수많은 태실들이 본래의 위치에서 옮겨졌거나, 변형된 경우가 상당수임에 비하여 원래의 위치에 온전하게 남아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더욱 문헌 기록이 희귀한 조선 전기의 태실 형태가 남아 있고, 아기 태실과 가봉 태실, 가봉 개수 태실의 변천과정까지 한눈에 시대성, 역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이에 대한 기록 역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태봉등록』 등의 문헌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태봉의 위치 역시 『여지도』, 『해동지도』, 『조선팔도지도』, 『지승』, 『조선지도』, 『팔도군현지도』, 『청구도』, 『광여도』, 『1872년지방지도』, 『청구요람』 등의 고지도 서산 및 해미조에 모두 수록되어 있어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 지정사례

진천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사적 제414호, 1999.06.11 지정)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사적 제444호, 2003.03.06 지정)

○ 문헌자료

沈賢容, 『朝鮮時代 胎室에 관한 考古學的 研究』, 江原大學校博士, 2015.

尹碩寅, 『朝鮮王室의 胎室 變遷 研究 : 西三陵 移藏 胎室을 中心으로』, 檀國大學校碩士, 2000.

國立文化財研究所, 『西三陵胎室』, 1999.

李銀植, 『世宗大王 端宗大王 胎室儀軌』, 2000.

國立文化財研究所 編, 『(國譯)胎封臚錄』, 2006.

朴光烈·金東淑·金熙哲, 『醴泉 鳴鳳里 朝鮮王朝 胎室(文宗·莊祖) 遺蹟』, 성림문화재연구원, 2014.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연구단 편, 『歷史書 및 文集 所載 胎室 關聯 記錄 集成』, 2015.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연구단 편, 『胎室 關聯 臚錄 및 儀軌 集成』, 2015.

##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명종대왕 태실 및 태실비는 조선 전기의 태실로서 아기 태실과 가봉 태실, 가봉 개수 태실의 변천과정에 이르는 시대성, 역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더욱 조선왕실의 수많은 태실들이 본래의 위치에서 옮겨졌거나, 변형된 경우가 상당수임에 비하여 원래의 위치에 온전하게 남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태실과 그 주변 석물의 양식은 기록을 통하여 절대 연대가 확인되는 만큼 조선 왕조 태실에 대한 미술사적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명종대왕 태실 및 태실비는 보물로 승격해 보존하고, 연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다만, 지정 이후 유적 및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정비 계획의 수립은 일제강점기 이후 진행된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학술적 연구와 함께 각 석물의 보존과학적 보존처리까지 반영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7.08.25	대상문화재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미술사
	소속	대전시청	직위(직책)	학예연구사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보물		
	문화재 명칭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7 년 12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산6-2

□ 소유자(관리단체) :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현재지정사항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21호(1986년 지정)

## 1. 서산 명종 태실의 연혁

서산 명종 태실(胎室)은 조선 제13대 명종(1534~1545)의 태(胎)를 묻은 구조물이다. 태실은 태를 땅속에 안장하는 석함(石函)과 그 석함을 보호하기 위한 지상 구조물로 나눌 수 있다. 서산 명종 태실의 연혁을 살펴보면, 일제 강점기 때 태호(胎壺)와 지석이 경기도 고양 서삼릉으로 옮겨지면서 손실이 있었으며, 1975년경 수습 차원의 정비가 있었다.<sup>1)</sup> 이후 1996년 서삼릉 명종 태실이 발굴되었고, 현재는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전되었다.<sup>2)</sup>

태실의 주인공인 명종은 1534년(중종 29)에 태어났으며, 태실의 건립은 1538년(중종 33)에 이루어졌다. 발굴된 명종 태실의 지석(誌石)에 의하면 “황명가정십삼년오월이십이일인시생(皇明嘉靖十三年五月二十二日寅時生) 왕남대군춘령아지씨태가정십칠년이월이십일일묘시장(王男大君椿齡阿只氏胎嘉靖十七年二月二十一日卯時藏)”이라고 적혀 있어<sup>3)</sup> 명종은 1534년에 태어났지만, 지석은 1538년 안장한 것이다. 이로써 명종 태실의 최초 건립은 1538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태실 앞의 표석은 여러 시기에 걸쳐서 세워졌다.

명종 태실 앞의 표석(表石)은<sup>4)</sup> 모두 3기가 있다. 첫 번째 표석은 중앙태석을 바라보고 향우측에 있는 아기태실비로, 정식명칭은 <대군춘령아기씨태실비(大君椿齡阿只氏胎室碑)>이다. 형태는 하엽방부형(荷葉方趺形)으로, 머릿돌은 연잎

1) 서산시, 『명종대왕 태실 및 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자료, 2016. p.28; <명종대왕 태실> 문화재안내판.

2) 국립문화재연구소, 『西三陵胎室』, 1999, p.30.

3) 국립문화재연구소, 『西三陵胎室』, 1999, p.64

4) ‘표석(表石)’이라는 용어는 『태봉등록(胎封謄錄)』에 근거하였다. 『태봉등록』 임인 7월초7일(1662); 『태봉등록』 임인 8월초4일(1662); 『태봉등록』 신유 8월초3일(1681);

형이고, 받침돌은 방형이다. 아기태실비의 건립연도는 음기(陰記)에 의하면 가정 17년(1538) 2월 21일로 태실 최초 건립당시 세워진 것이다.<sup>5)</sup> (그림 1의 2번)

두 번째 표석은 중앙태석을 바라보고 중앙에 있는 가봉개수태실비로, 정식명칭은 <주상전하태실비(主上殿下胎室碑)>이다. 형태는 이수귀부형(螭首龜趺形)으로 머릿돌은 이수형

이고, 받침돌은 거북형태이다. 이 표석의 건립연도는 비신(碑身)과 귀부(龜趺)가 다른데, 비신의 건립연도는 음기에 의하면 가정 25년후 165년(1711) 10월이다.<sup>6)</sup> 그러나 귀부는 18세기 전반기의 미술사적 양식과 다르고, 16세기의 양식을 띠고 있어 예전에 만들었던 가봉태실비의 귀부를 1711년에 다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의 4번).

세 번째 표석은 중앙태석을 바라보고 향좌측에 있는 가봉태실비로, 정식명칭은 <주상전하태실비(主上殿下胎室碑)>이다. 형태는 이수방부형(螭首方趺形)으로 머릿돌은 이수형이고, 받침돌은 방부형이다. 건립연도는 비신(碑身)은 가정 25년(1546) 10월로<sup>7)</sup> 명종이 즉위한 해에 제작한 가봉비(加封碑)이다. 그러나 받침돌은 양식적으로 제작연도가 달라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의 3번).

정리하면, 서산 명종 태실은 1538년(중종 33)에 처음 설치되었고, 그후 1546년(명종 1)에 명종이 즉위하면서 가봉(加封)을 하였고, 다시 1711년(숙종 37)에 표석을 개수하였다. 이때 태실 난간석의 황죽석, 상석(裳石), 표석 귀부 등의 석물을 함께 수리하였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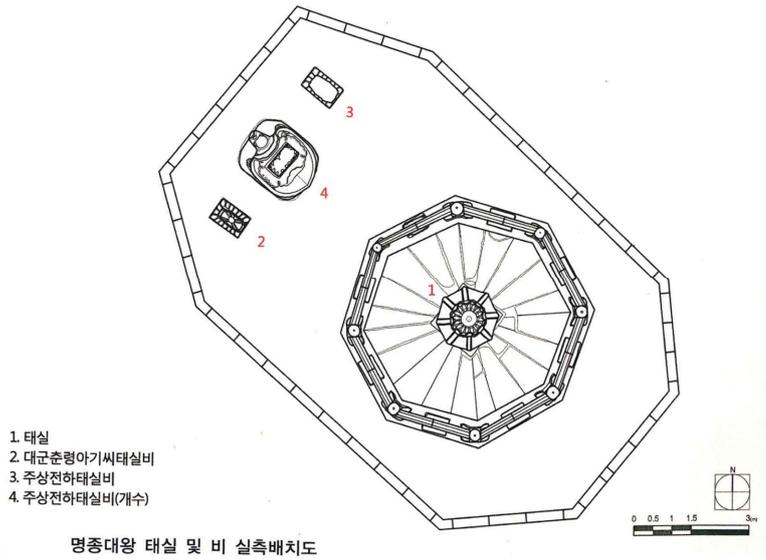


그림 1 명종 태실 및 비 실측배치도, 『명종대왕 태실 및 비』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자료』, 서산시, p.37.

5) <大君椿齡阿只氏胎室碑> 嘉靖十七年二月二十一日卯時立. 충남 서산시 운산면 명종 태실 소재.

6) <主上殿下胎室碑> 嘉靖二十五年十月日建 後一百六十五年辛卯十月日改石. 충남 서산시 운산면 명종 태실 소재.

7) <主上殿下胎室碑> 嘉靖二十五年十月日建. 충남 서산시 운산면 명종 태실 소재.

그러나 일제강점기때 명종의 태호와 지식도 함께 고양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태실 석물이 손상되었음이 추정된다. 이후 1975년 손상된 명종 태실을 수습차원에서 정비하였으며,<sup>9)</sup> 1986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21호로 지정되었다.



그림 2 1997년 바닥 판석 정비 이전의 전경, 1975~1997년 이전 촬영 추정, 서산시 제공.

1997년도에 태실 주변 바닥에 화강암 판석을 까는 정비사업을 진행하였으며,<sup>10)</sup> 현재까지 판석이 깔린 상태로 남아 있다. 1997년 이전의 사진을 확인해 본 결과, 바닥이 토양으로 된 상태임이 확인되었다(그림 2).

## 2. 서산 명종 태실 석조 문화재의 현황

서산 명종 태실의 석조 문화재의 현황은 크게 중앙태석부, 난간부, 기단부, 표석부로 나눌 수 있다. 중앙태석은 머릿돌은 개침석(盖簷石), 받침돌은 사방석(四方石)이고, 몸돌은 중동석(中童石)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중앙태석의 부분명칭에 대한 용어는 등록을 제외한 현전 태실의례 중 가장 오래된 『정종대왕태실가봉의례(正宗大王胎室加封儀軌)』(1801, 규장각)를 따랐다. 현재 조선시대 태실에 대한 미술사적 연구는 매우 희박한 상황으로 용어 및 미술사적 관점의 양식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상태이다.

명종 태실 중앙태석은 총높이 약275cm에 달하는 큰 규모이다. 개침석은 팔각형이고, 중동석은 원구형이며, 사방석은 사각형으로 여말선초 불교미술의 승탑과 유사한 구성이다. 개침석 상단에는 연봉형태의 원수(圓首)가 있으며 원수 하단은 연주문(連珠文)으로 돌렸다. 그 아래로는 뒤집어진 연엽(蓮葉)을 양각하였고, 추녀마

8) 『승정원일기』(숙종 37) 1월 7일; 『태봉실록』 신묘 정월 11일(1711); 『태봉실록』 신묘 10월초 3일(1711); 『태봉실록』 신묘 10월 20일(1711).

9) 서산시 공무원의 증언에 의하여 국가기록원의 기록에 1975년의 정비 내역이 있다고 전한다. 현재 문화안내판에도 1975년에 정비가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추후 정확한 국가기록원의 문헌기록조사가 요구된다.

10) 서산시, 『명종대왕 태실 및 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자료, 2016. p.28.

루는 두껍게 양각하였다. 이러한 개침석의 형태는 조선전기 왕릉 장명등과 비교할 수 있는데, 1537년 희릉이나 1545년 효릉 장명등의 개석(蓋石)과 유사하다(그림 3).

중동석은 배가 볼록한 석종형(石鐘形)이다. 가운데 배부분에는 문양이 없는 형태이다. 22대 정조 태실(강원 영월 소재)과 23대 순조 태실(충북 보은 소재) 중동석의 경우 만자형 운문(雲文)과 연환문(連環文)을 양각하여 18세기이후 시대적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방석은 커다란 중동석을 놓기 위한 받침돌의 단순한 방형 형태이다. 상단은 중동석을 받치기 위하여 아무 무늬없이 편평한 면을 유지하고 있다. 상대는 복엽의 양편을 양각하였고, 중대는 좁은 돌대의 형태이다. 하대에는 문양없이 상석(裳石)과 연결짓기 위한 회가 붙은 상태이다.

명종 중앙대석의 제작연도는 1538년~1546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16세기 전반기의 제작양식을 지니고 있다. 개침석은 1537년 희릉이나 1545년 효릉 장명등과 유사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여말선초 종형 승탑과 매우 유사하며 회암사지 지공선사 석조부도의 원당형과 유사한 형태가 특징이다.

난간석은 8각형태인데, 조선 왕릉의 12각 난간석을 축소한 형태이다. 난간주석과 연엽동자석주, 황죽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1546년과 1711년에 걸쳐서 여러번 개수를 한 상태로 현재 시대가 혼재되어 있다.

기단부는 중앙대석을 받치고 있는 면상석(面裳石), 우상석(隅裳石)이 연결되어 있으며 난간석주와 연엽동자석주를 받치고 있는 면전석(面磚石)과 우전석(隅磚石)이 연결되어 있다. 현재는 중앙대석을 회반죽으로 이은 부분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표석부는 모두 3기의 비석이 남아 있다. 첫 번째 표석인 <대군춘령아기씨태실비(大君椿齡阿只氏胎室碑)>는 1538년(중종 33)에 세워진 것이다. 현전 총높이 약150cm이고,<sup>11)</sup> 15~16세기에 유행하였던 전형적인 하엽방부형의 표석이다. 현재는 연봉형의 원수(圓首)가 없어진 상태이다. 하엽방부형의 비석은 능묘의 경우 15세기부터 16세기중반까지 유행한 형식이다. 유사한 예로는 서울의 영춘군 이인(李仁) 묘표

11) 서산시, 『명종대왕 태실 및 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자료, 2016. p.61.

(1528년), 수원의 이우(李耦) 묘표(16세기)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표석은 가봉개수태실비이고, 정식명칭은 <주상전하태실비(主上殿下胎室碑)>이다. 이수와 비신은 1711년(숙종 37)에 새로 세워진 것이고, 귀부대석은 1546년(명종 즉위년) 제작한 것을 다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양식적으로 이수와 귀부의 양식이 서로 맞지 않는다. 귀부는 16세기의 전형적인 거북머리의 대석으로 정면을 향해 있으며, 고개는 하늘을 향해 들고 주둥이는 앞으로 돌출되었다. 현전 총높이는 약275cm정도이며,<sup>12)</sup> 16세기 귀부의 유사한 예로는 경기도 오산의 윤훤(尹萱)의 신도비(1543년) 등이 있다.

세 번째 표석은 가봉태실비로 정식명칭은 <주상전하태실비(主上殿下胎室碑)>이다. 1546년(명종 즉위)에 세워진 것으로 현재는 이수방부형이다. 원래 대석은 귀부였으나 가봉태실비가 금이가서 1711년 새로 제작하면서 귀부는 비신의 받침돌로 다시 쓰이고, 현재의 방형 대석은 후대에 다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수는 용한마리가 여의주를 쥐고 희롱하는 모습이 전면에 새겨져 있으며, 현전 총높이는 약210cm정도이다.<sup>13)</sup> 16세기 이수의 유사한 예로는 양주 최명창(崔命昌) 묘표(1537년), 고양의 이성군 이관(李慣) 묘표(1556년) 등과 유사하다.

정리하면, 명종 태실의 석조물은 현재 태호는 다른 곳에 이전되었지만, 외부 석조 조형물은 원래의 위치에 그대로 자리잡고 있는 사례이다. 또한 아기태실비부터 가봉태실비, 가봉개수태실비가 함께 현전하고 있어 역사성이 또렷하다. 아울러 난간석과 기단부가 있는 중앙대석이 함께 남아 있어 전체 태실 석조문화재의 원형이 남아있는 중요한 문화재이다.

### 3. 서산 명종 태실의 특징

태실문화재의 특징은 지정 가치와 직결된다. 명종 태실의 지정가치는 인물의 중요도, 원형보유성, 시대성, 희귀성, 예술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판단해보면, 명종 태실은 조선 27대 즉위한 왕의 가봉태실 중 원래의 위치에 온전하게 남아 있는 중요한 문화재이다. 따라서 인물의 중요도와

12) 서산시, 『명종대왕 태실 및 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자료, 2016. p.65.

13) 서산시, 『명종대왕 태실 및 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자료, 2016. p.63.

원형의 보유성에 대한 가치는 매우 높다. 특히 왕의 가봉태실이 명확한 원래의 위치에 온전하게 보존된 곳은 매우 희귀하기 때문에 명종 태실은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더구나 문헌 기록이 희귀한 조선 전기의 태실 형태가 남아 있고, 아기 태실과 가봉 태실, 가봉 개수 태실의 변천과정까지 한눈에 시대성, 역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특히 ‘안태문화(安胎文化)’라는 우리나라만의 고유성을 지니고 있어 독자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연구성과가 이미 축적된 조선시대 왕릉 석조물과 비교할 수 있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 세계유산인 조선 왕릉 석조물과 비교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다만 예술성은 현전 태실 석물이 매우 적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의 시대가 혼재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미술사적 연구성과가 미비하여 앞으로 개척해야 할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다른 즉위한 왕의 가봉태실과 비교하면, 원래의 위치에 유존하는 곳은 여러 개소이나 변형된 상태가 많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1대 태조의 태실(충남 금산 소재, 유형 131호)은 원래 함경 용연에 있던 것을 1393년에 이전하였고, 일제강점기 때 훼손된 것을 1993년 현재의 위치에 이전 복원해놓은 것이다. 7대 세조의 태실(경북 성주 소재, 사적 444)은 원위치는 맞으나 ‘세종대왕자 태실’ 19기중 하나로 묶여 있고, 중앙태석과 가봉태실비는 있으나 난간석은 없는 형태이다. 8대 예종 태실(전북 전주 소재, 민속문화재 26호)은 중앙태석과 난간석 등은 있으나 원래의 위치에서 약간 이전하여 1970년대에 복원한 것이다. 12대 인종 태실(경북 영천 소재)은 2007년도에 복원한 것이다. 19대 숙종 태실비(충남 공주, 문화재자료 321)는 1869년에 양주로 이전하였다. 20대 경종 태실(충북 충주 소재, 유형 6호)은 1970년대에 복원한 것이다. 21대 영조 태실(충북 청주, 기념물 69호)은 중앙태석과 난간석, 아기태실비, 가봉태실비가 모두 있으나 원위치에서 동북 쪽으로 이전하여 1980년대에 복원한 것이다. 22대 정조 태실(강원 영월 소재, 유형 114호)은 중앙태석과 난간석, 아기태실비, 가봉태실비가 있으나 원위치에서 벗어나 인근으로 이전하여 1997년도에 복원한 것이다. 23대 순조 태실(충북 보

은 소재, 유형 11호)은 원래의 위치에 중앙대석과 난간석, 가봉태실비가 전재하며 1982년에 난간을 해체하여 보수한 것이다.<sup>14)</sup>

이에 비해 13대 명종의 태실은 원래의 위치가 명확하고, 중앙대석, 난간석, 지대석은 물론 아기태실비와 가봉태실비, 가봉개수태실비까지 모두 현전한다. 앞서 살펴본대로 남아있는 가봉태실 중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 원 위치에서 이전되었거나 복원되었더라도 원형과 일부 다르게 설치하여 본 모습을 갖춘 것은 많지 않다.<sup>15)</sup>

앞으로 전체적인 조선시대 왕 태실의 종합적인 학술현지조사가 전제된다면 보다 명확하고 자세한 결과가 유추될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태실관련 석물은 여러차례에 걸쳐 보수되어 제작연도가 여러번에 걸쳐 있는데 이러한 기본 연구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 4. 조사자 의견

위에서 살펴본대로 명종 태실은 16세기의 원형과 18세기의 개수 등을 거쳐 완성된 중요한 가봉 태실이다. 명종 태실의 최초 건립은 1538년이고, 명종 태실 지식은 1538년에 제작되었으며, 아기태실비인 <대군춘령아기씨태실비(大君椿齡阿只氏胎室碑)>는 1538년 제작이다. 이 표석은 15~16세기에 유행하였던 전형적인 하엽방부형의 표석으로 16세기 전반기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다. 또한 가봉태실비인 <주상전하태실비(主上殿下胎室碑)>는 1546년(명종 즉위)에 세워진 것으로 현재는 이수방부형이다. 원래 대석은 귀부였으나 가봉태실비가 금이가서 1711년 새로 제작하면서 귀부는 새 비신의 받침돌로 다시 쓰이고, 현재의 방형 대석은 후대에 다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봉개수태실비인 <주상전하태실비(主上殿下胎室碑)>는 이수와 비신은 1711년(숙종 37)에 새로 세워진 것이고, 귀부대석은 1546년(명종 즉위년) 제작한 것을 다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양식적으로 이

14) 태실의 전체 현황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조하였다. 문화재청, <http://www.heritage.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서산시, 『명종대왕 태실 및 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자료, 2016; 국립문화재연구소, 『西三陵胎室』, 1999; 윤석인, 「조선 정조대왕 태실 연구」, 『문화재』 제46권 제1호, 2013; 이효정, 「조선 중기 명종 태실의 석물 양식 연구」(한서대학교 국제예술디자인대학원 문화재보존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책2권 더.

15) 이효정, 「조선 중기 명종 태실의 석물 양식 연구」(한서대학교 국제예술디자인대학원 문화재보존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p.43.

수와 귀부의 양식이 서로 맞지 않으며, 귀부는 16세기의 전형적인 거북머리의 받침돌이다.

중앙태석과 난간부, 기단부는 1538년부터 1546년 사이에 최초 제작되었고, 1711년의 수리 등을 거쳤다. 전체적으로 16세기 전반기의 제작양식을 지니고 있다. 개침석은 1537년 희릉이나 1545년 효릉 장명등과 유사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여말선초 종형 승탑과 매우 유사하며 회암사지 지공선사 석조부도의 원당형과 유사한 형태이다.

난간석은 8각형태인데, 조선 왕릉의 12각 난간석을 축소한 형태이다. 특히 난간주석과 연엽동자석주, 황죽석 등은 1546년과 1711년에 걸쳐서 여러번 개수를 한 상태로 현재 시대가 혼재되어 있다.

이상으로 태실의 연혁과 현황, 명종 태실의 특징 등을 살펴본 결과 명종 태실은 보물로서의 지정가치가 충분하다. 조선 태실 석물은 조선 왕릉처럼 다양하고 많은 석물이 남아있지 않지만, 왕의 탄생과 관련이 있고, 조선 왕실 석조 미술 문화재의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된다. 또한 명종 태실은 인물의 중요도, 원형의 유지, 시대성, 희귀성 등에서 다른 태실보다 월등하게 높은 고유성과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문화재이다.

다만, 1997년도에 명종 태실 주변 바닥에 화장암 판석을 까는 정비사업을 진행하였는데 1997년 이전의 사진을 확인해 본 결과, 원래는 바닥이 토양상태임이 확인되었다(그림 2 참조). 문화재의 원형성을 원칙으로 할 때 1997년도에 진행한 태실 주변 바닥 판석은 제거해야 되지만, 판석을 함부로 제거할 경우 구조물의 물리적인 변경이 우려된다. 보존과학분야의 자문을 받아 문화재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지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7. 창경궁 자격루 보존처리 및 이전 전시 검토

### 가. 제안사항

서울 중구 소재 사적 「덕수궁」의 광명문 내 위치하고 있는 국보 「창경궁 자격루」를 '18년 광명문의 원위치 이전에 따라 문화재보존과학센터로 옮겨 보존처리하고, 이후 국립고궁박물관에 이전 전시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사적 「덕수궁」 내 위치한 국보 「창경궁 자격루」를 문화재보존과학센터로 옮겨 보존처리 후 다시 국립고궁박물관에 이전 전시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궁능문화재과장)
- (2) 대상문화재명 : 창경궁 자격루
  - 소 재 지 : 서울 중구 정동 5-1 덕수궁
  - 지 정 일 : 1985. 08. 09.
- (3)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18년 2월 ~ 완료 시까지
  - 사업내용 : 창경궁 자격루 보존처리 및 이전 전시

###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 8.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주변 공양간 증축 검토(2차)

### 가. 제안사항

‘17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남 강진군 소재 국보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주변 공양간 증축사업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17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남 강진군 소재 국보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주변 공양간 증축사업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 ‘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7.06.15) : 부결  
- 증축 필요성 미흡

###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 소재지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1174 무위사
  - 지정일 : 1962. 12. 20.
- (2) 사업내용
  - 사업범위 : 공양간 증축
  -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공양간을 증축하고 주변 석축 및 담장을 정비한다.
  - 주요내용
    - 공양간 증축( $A=71.82\text{m}^2 \rightarrow 125.84\text{m}^2$ )
    - 규모 : 정면 6칸, 측면 3.5칸(ㄱ자형)

- 구조 : 한식목구조
- 지붕 : 팔각지붕, 맞배지붕

**라. 관계전문가 자문의견('17.03.27 / 전)문화재위원 ○○○·○○○)**

- 사찰의 배치축과 기존 건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했을 때 ‘—’자 형태에서 직각 방향으로 증축하여 수평축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공양간은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주변 위생시설 사용에 대한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좋겠음
- 지형의 단차로 인해 발생하는 지하공간을 저온저장고 및 창고로 활용하여 공양간을 보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 기존 석축 및 담장은 증축되는 공양간 축에 맞춰 선형을 재정비하되 기존 쌓기 방식 및 높이는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계획에 반영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 9. 창녕 관룡사 약사전 보수정비기본계획 검토

### 가. 제안사항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남 창녕군 소재 보물 「창녕 관룡사 약사전」 관련 창녕 관룡사 약사전 보수정비기본계획을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보물 「창녕 관룡사 약사전」 관련 약사전 보수정비기본계획을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17년 제2차 종합정비계획 검토회의(2017.11.14.)에서 검토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창녕군수
- (2) 대상문화재 : 창녕 관룡사 약사전
  - 소재지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292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보수정비기본계획 내용
  - 수리 기준시기 설정(1507년 약사전 재건, 1930년 유리건판 사진 참조)
  - 문화재 수리절차 개선
  - 해체보수 전 지속 모니터링 및 시급한 보수(방충·살충 처리)
  - 기초조사연구(부재 재활용 방안연구, 구조부재 손상도 조사 및 보수·보강 실험연구, 벽화 보존처리, 단청 문양·안료·전통기법 조사 및 문양복원도 제작연구)

- 해체조사
  - 해체조사설계
  - 가설공사(철골가설 덧집)
  - 해체공사
- 수리공사
  - 수리공사설계
  - 부재 보수·보강(대량·살미·침차 보강 및 손상 부재 교체)
  - 조립공사(초석 드잡이, 기단 자연석허튼층쌓기, 고막이벽 쌓기, 창호 원형 회복)
  - 단청 및 벽화 보존처리
- 수리보고서 작성

#### 라. 제2차 종합정비계획 검토회의 의견

(‘17.11.14 / 문화재위원 000·000·000, 문화재전문위원 000·000)

- 약사전은 전체해체보수를 전제로 보수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우선 공포이상 해체보수를 선행하고, 창방이하 해체보수는 공포이상 해체 결과를 근거로 재논의토록 함
- 창호 복원은 금번에 고증자료와 사례조사를 기초로 시행토록 함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변형된 기단은 축소하되 안전성 및 원형·원위치에 대한 충분히 고려 후 시행
  - 석불 보존 방안 재검토 필요(임시 이전 보관 등)
  - 복원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및 재검토 필요
  - 벽화는 보존처리 후 현 위치 재부착 방안 마련
  - 전통재료 사용에 대한 재검토 필요(단청안료, 전통방식)
  - 향후 추가 용역 사업에 대한 범위·내용과 가설덧집 등의 사업비 재검토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9명, 부결 1명

## 10.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 정밀안전진단 결과 검토

### 가. 제안사항

충북 영동군 소재 보물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에 대하여 2017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에 대하여 2017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

- 소재지 : 충북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 151-1
- 지정일 : 2003. 03. 14.

#### (2) 용역개요

- 용역명 :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 정밀안전진단 용역
- 용역기간 : 2017.07.04~2017.12.30
- 안전진단 범위
  - 관련 문헌 및 자료 수집, 분석
  - 현장조사 및 시험
  - 변위·변형 분석
  - 지구물리탐사(전기비저항탐사, 지하투과 레이더 탐사, 굴절법 탄성파탐사)
  - 구조 안전성 검토
  - 보존 관리방안 제시

### (3) 용역 결과

- 현재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변형은 발생하지 않고 있음
- 본 탑이 갖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과 함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어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음
- 초음파속도를 통한 석재의 내구성 평가에서는 지대석의 중간에 끼여 있는 석재와 1층 탑신의 정면 쪽 면석, 2층 탑신 등은 낮은 초음파속도가 분포하고 있어 재료적 성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로 보존관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기단면석과 1층 탑신석의 내부 공간에 채움재가 채워져 있지 않음. 1층 탑신석은 좌·우면에 위치하고 있는 두 면석은 기존의 석재로 추정되나 정·배면에 위치하고 있는 면석은 좌·우면의 면석 사이에 새롭게 끼워놓은 형태를 취하고 있고 정·배면의 두 면석은 상부의 1층 옥개석을 거의 지지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하부의 기단갑석에도 각 면당 두 포인트 정도 점지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형태이며, 기존의 좌·우면 두 면석도 포인트 접촉에 의해 지지되고 있어 내부 채움재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는 수평변형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내부 채움재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석탑은 단위석재의 변형이나 이완, 파손 및 쪼개짐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단위석재간 맞댄면에서 이격이 발생되어 있고 이격 틈 사이에는 보수재를 충전하거나 철판을 삽입해 놓아 상부 하중의 지지 관계가 불안정하고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편중하중에 의한 응력 집중이 구조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반야사 삼층석탑은 구조적 위험요소나 불합리성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해체 복원이 필요함

### 라. 관계전문가 자문의견(2017.12.19 / 충북대 ○○○, 단국대 ○○○)

- 용역성과물(정밀실측 부분, 안전진단 부분)이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 정밀실측 지침에 따라 잘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 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지진에 대한 구조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해체보수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 및 검토가 관리단체 및 관계기관에 의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기준점은 다른 사업에서도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동 변화가 없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문화재청 발간보고서 성과에 수록되어 있는 반야사 관련 사료를 일부 인용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사적 인물과 시기의 불일치 오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보완작업 필요함.
- 반야사에 대한 기준 연대가 확실한 문헌자료가 많지 않지만, 출토유물 등 구체적인 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대안적 시기고찰방식 등을 고려해서 연혁에 대한 보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상륜부 복발, 기단부 지대석 등의 일부 부재에서 기존의 화강석 부재들과 다른 종류의 석재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고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밀실측보고서에서 기단석 하부에서 모르타르(무근 콘크리트) 등에 대한 확인 결과가 수록되어 있으나, 안전진단보고서에는 모르타르 확인 결과에 대한 검토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조사결과에 대한 상호 보완이 필요함.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이전 조립 과정에서의 정향 배치 여부 판단 및 검토 필요
  - 안정성 판단에 대한 구체적 수치 데이터 제시 필요
  - 부재 물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검토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9명, 부결 1명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8-01-011

**1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경북 상주시 소재 보물 「상주 양진당」 주변 하천 정비사업 등 허가신청 11건에 대하여 자체검토회의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소 계		11건	허가 7건 변경허가 2건 조건부허가 2건	
상주 양진당	경북 상주 (상주시장)	<input type="checkbox"/> 하천 정비 사업 ○ 위치 :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일원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00m 이격) ○ 내용 - 식생옹벽블록 : H=0.5~2.0m, L=483m - 토공 : 흙깎기921㎡, 흙쌓기420㎡, 터파기457㎡, 퇴메우기350㎡ - 배수공 : 파형강관(D600~1200mm), L=26m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 A=141㎡	허가	'18.01.10
서울 장의사지 당간지주	서울 종로 (○○○)	<input type="checkbox"/> 다세대주택 건립 ○ 위치 : 종로구 신영동 214-65 * 제3구역(보호구역에서 83m 이격) ○ 사업부지면적 : 476㎡ ○ 건축(연)면적 : 140.85㎡(829.77㎡)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수 및 높이 : 지하2층, 지상3층 / 12.44m	허가	'18.01.10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 삼존입상	경남 함안 (마애사 주지)	<input type="checkbox"/> 지장전(위패봉안소) 건립(6차) ○ 위치 :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1031-2 외 4필지 * 제2구역(보호구역에서 382m 이격) ○ 사업내용 : 지장전(위패봉안소) 건립	허 가	'18.01.1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4차 (조건부 가결/ 10월)</th> <th>6차 (보류/12월)</th> <th>금차</th> </tr> </thead> <tbody> <tr> <td>건축 면적</td> <td>105.9㎡</td> <td>149.7㎡</td> <td>좌동</td> </tr> <tr> <td>연면적</td> <td>2,075㎡</td> <td>2,057㎡</td> <td>좌동</td> </tr> <tr> <td>구조</td> <td>철근콘크 리트구조</td> <td>좌동</td> <td>좌동</td> </tr> <tr> <td>층수</td> <td>지하 2층 지상 1층</td> <td>지하 2층 지상 1층</td> <td>좌동</td> </tr> <tr> <td>높이</td> <td>83~166m</td> <td>78~154m</td> <td>좌동</td> </tr> <tr> <td>기타</td> <td></td> <td></td> <td>수목계획 및 도면 보완</td> </tr> </tbody> </table>			구분	4차 (조건부 가결/ 10월)	6차 (보류/12월)	금차	건축 면적	105.9㎡	149.7㎡	좌동	연면적	2,075㎡	2,057㎡	좌동	구조	철근콘크 리트구조	좌동	좌동	층수	지하 2층 지상 1층	지하 2층 지상 1층	좌동	높이	83~166m	78~154m	좌동	기타			수목계획 및 도면 보완
		구분			4차 (조건부 가결/ 10월)	6차 (보류/12월)	금차																									
		건축 면적			105.9㎡	149.7㎡	좌동																									
		연면적			2,075㎡	2,057㎡	좌동																									
		구조			철근콘크 리트구조	좌동	좌동																									
		층수			지하 2층 지상 1층	지하 2층 지상 1층	좌동																									
		높이			83~166m	78~154m	좌동																									
기타			수목계획 및 도면 보완																													
* '17.5월부터 4차례 심의를 거쳐 10월 문화재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되었으나 조건 이외의 사항을 변경하여 재신청하여 11차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됨 * '17년 12월 자체회의에서 '보류-설계도면 보완 후 재심의' 결정 후 보완 서류 제출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 상	경기 이천 (이천시장)	<input type="checkbox"/> 도로확포장(농도 303호선) ○ 위치 :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821 일원 * 제2구역(보호구역에서 105m 이격) ○ 사업규모 : 5,248㎡(L=약400m, B=8m) ○ 흙깎기, 터파기, 흙쌓기 등 ○수로BOX 설치 등 ○아스팔트 포장	허 가	'18.01.10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익산 고도리 석조여래입상/ 익산 승림사 보광전	전북 익산 (익산시장)	<input type="checkbox"/> 문화재투어 스탬프 거치대 설치 ○ 위치 :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1086 / 웅포면 송천리 5 * 보호구역 내 ○ 거치대 규격 - 길이32cm, 폭33cm, 높이1.2m ○ 석재기초 매설(터파기 30cm)	허가	'18.01.10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경남 함안 (함안군수)	<input type="checkbox"/> 건강 힐링쉼터 및 문화공동체 마당 설치(재심의) ○ 위치 : 함안군 함안면 대산리 1114번지 일원 * 보호구역 내 및 제2구역 ○ 사업내용 : 문화재주변 정비 - 건강 힐링쉼터(570㎡) <table border="1" data-bbox="544 987 1126 1491"> <thead> <tr> <th>구분</th> <th>1차 (‘17.12/보류)</th> <th>금차</th> </tr> </thead> <tbody> <tr> <td>육각정자</td> <td>1개소</td> <td>1개소 *위치이동</td> </tr> <tr> <td>운동시설</td> <td>4종</td> <td>좌동</td> </tr> <tr> <td>수목식재</td> <td>125주</td> <td>103주</td> </tr> <tr> <td>포장</td> <td>디딤돌 : 176㎡ 점토블록 : 230㎡ 편석 : 337㎡</td> <td>디딤돌 : 110㎡ 편석 : 536㎡</td> </tr> <tr> <td>전통담장</td> <td>L=40m H=590mm</td> <td>좌동</td> </tr> </tbody> </table> - 문화공동체마당(1,743㎡)-변동없음 · 공연장 1개소 · 태양광 공원 등(높이5m) 6개 · 포장(디딤돌, 잔디블록 / 298㎡) - 주변정비 - 변동없음 · 콘크리트 포장깨기(523㎡) · 블록담장 철거 및 조경식재 - 공원 등 및 연등기등 13개소 - 변동없음 * ‘17년 12월 자체회의에서 ‘보류-설류 보완 후 재심의’ 결정 후 보완 서류 제출	구분	1차 (‘17.12/보류)	금차	육각정자	1개소	1개소 *위치이동	운동시설	4종	좌동	수목식재	125주	103주	포장	디딤돌 : 176㎡ 점토블록 : 230㎡ 편석 : 337㎡	디딤돌 : 110㎡ 편석 : 536㎡	전통담장	L=40m H=590mm	좌동	허가	'18.01.10
구분	1차 (‘17.12/보류)	금차																				
육각정자	1개소	1개소 *위치이동																				
운동시설	4종	좌동																				
수목식재	125주	103주																				
포장	디딤돌 : 176㎡ 점토블록 : 230㎡ 편석 : 337㎡	디딤돌 : 110㎡ 편석 : 536㎡																				
전통담장	L=40m H=590mm	좌동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p>	<p>경남 양산 (통도사 주지)</p>	<p>□ 보광선원 신축(재허가) ○ 위치 :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450m 이격) ○ 사업내용 : 보광선원 신축 ○ 사유 : 사업 기간 만료 및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재신청 - 체험관A, 체험관B, 연구동, 세면장이 허가된 위치에서 2.66~7.97m 이동</p> <table border="1" data-bbox="544 763 1129 1205"> <thead> <tr> <th data-bbox="544 763 683 853">구분</th> <th data-bbox="683 763 906 853">기 허가사항 (‘16.4월)</th> <th data-bbox="906 763 1129 853">금차</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44 853 683 909">교육관</td> <td data-bbox="683 853 906 909">291.6㎡</td> <td data-bbox="906 853 1129 909">좌동</td> </tr> <tr> <td data-bbox="544 909 683 965">체험관A</td> <td data-bbox="683 909 906 965">195.3㎡</td> <td data-bbox="906 909 1129 965">좌동</td> </tr> <tr> <td data-bbox="544 965 683 1021">체험관B</td> <td data-bbox="683 965 906 1021">195.3㎡</td> <td data-bbox="906 965 1129 1021">좌동</td> </tr> <tr> <td data-bbox="544 1021 683 1077">연구동</td> <td data-bbox="683 1021 906 1077">176.8㎡</td> <td data-bbox="906 1021 1129 1077">132.4㎡</td> </tr> <tr> <td data-bbox="544 1077 683 1155">세면장</td> <td data-bbox="683 1077 906 1155">지하103.7㎡ 지상155.5㎡</td> <td data-bbox="906 1077 1129 1155">좌동</td> </tr> <tr> <td data-bbox="544 1155 683 1205">대문채</td> <td data-bbox="683 1155 906 1205">15.2㎡</td> <td data-bbox="906 1155 1129 1205">제외</td> </tr> </tbody> </table>	구분	기 허가사항 (‘16.4월)	금차	교육관	291.6㎡	좌동	체험관A	195.3㎡	좌동	체험관B	195.3㎡	좌동	연구동	176.8㎡	132.4㎡	세면장	지하103.7㎡ 지상155.5㎡	좌동	대문채	15.2㎡	제외	<p>허 가</p>	<p>‘18.01.10</p>
구분	기 허가사항 (‘16.4월)	금차																							
교육관	291.6㎡	좌동																							
체험관A	195.3㎡	좌동																							
체험관B	195.3㎡	좌동																							
연구동	176.8㎡	132.4㎡																							
세면장	지하103.7㎡ 지상155.5㎡	좌동																							
대문채	15.2㎡	제외																							
<p>여주 창리 삼층석탑</p>	<p>경기 여주 (○○○)</p>	<p>□ 단독주택 및 근생시설 신축(허가사항 변경) ○ 위치 : 여주시 상동 산16-5 * 제3구역(보호구역에서 170m 이격) ○ 대지면적 : 4,423㎡→4,294㎡ ※ 등록전환에 의함 ○ 용도 및 동수 : 단독주택 9동→ 단독7동(부속2동), 단독 및 근생 2동 ○ 전체 건축면적(연면적) : 700.83㎡(700.83㎡) → 896.31㎡(896.31㎡)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1층, 5.3m → (최대규모)지하1층, 지상2층 / 9.75m ○ 주요 변경사항 · 9개로 구획된 부지 내 세부 건축계획 변경</p>	<p>변경허가</p>	<p>‘18.01.10</p>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전주 풍패지관	전북 전주 (주)전주호텔 더프라임	<input type="checkbox"/> 숙박시설 신축(허가사항 변경, 2차) ○ 위치 :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3가 54-5 외 1 * 제7구역(보호구역에서 440m 이격) ○ 대지면적 : 1,535㎡→1,755㎡ ○ 건축면적(연면적) : 965.26㎡(13,166.16㎡) → 1,224.674㎡(14,438.321㎡)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수 및 높이 : 지하4층, 지상14층 / 55m ○ 주요 변경사항 · 1필지 추가에 따른 대지면적 증가 · 지하층 및 지상1,2층 규모 증가 ※ 허가받은자 변경 포함	변경허가	'18.01.10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충남 천안 (○○○)	<input type="checkbox"/> 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흥리 258-4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24m 이격) ○ 내용 :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1동</th> <th>2동</th> <th>3동</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건축 면적</td> <td>192㎡</td> <td>192㎡</td> <td>96㎡</td> <td>480㎡</td> </tr> <tr> <td>연면적</td> <td>192㎡</td> <td>192㎡</td> <td>96㎡</td> <td>480㎡</td> </tr> <tr> <td>구조</td> <td colspan="4">철골조</td> </tr> <tr> <td>층수</td> <td colspan="4">1층</td> </tr> <tr> <td>높이</td> <td colspan="4">7.75m</td> </tr> </tbody> </table>	구분	1동	2동	3동	계	건축 면적	192㎡	192㎡	96㎡	480㎡	연면적	192㎡	192㎡	96㎡	480㎡	구조	철골조				층수	1층				높이	7.75m				조건부허가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조사)	'18.01.10
구분	1동	2동	3동	계																														
건축 면적	192㎡	192㎡	96㎡	480㎡																														
연면적	192㎡	192㎡	96㎡	480㎡																														
구조	철골조																																	
층수	1층																																	
높이	7.75m																																	
완주 송광사 대웅전	전북 완주 (송광사 주지)	<input type="checkbox"/> 템플스테이체험관 부속시설(화장실, 샤워실 등) 건립 ○ 위치 :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2 * 보호구역 내 ○ 건축(연)면적 : 82.8㎡(82.8㎡) ○ 구조 : 철골구조+한식목구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1층(다락 포함), 6.66m ○ 기타 - 기존 부속창고 및 세탁실 철거	조건부허가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 조사)	'18.01.10																														

####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접수 9명